

연구총서 19-BB-02

표지면지

표지와 동일하게 흑백으로 들어갑니다.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 저 자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지원

유효은 (한국형사저역연구원 조사연구원)

이 보고서는 사실상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 31명의 사형확정자들을 만났고, 이들은 오랜 시간의 수용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연구진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를 통해 매우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서는 이중 극히 일부만 기술되었을 뿐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아쉬운 결과물을 내어 놓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준 사형확정자들과 관계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며, 연구진으로서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보고서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으나 귀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준 31명의 사형확정자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표현하지 쉽지 않은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낯선 연구진들에게 보여주었고, 이 과정에서 사형이라는 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각과 영감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었다. 특히 두 번째 만남에서 연구진에게 반가움을 표현해 주신 사형확정자들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몇몇분은 자신들이 직접 쓴 글과 글씨를 선물해 주기도 하였다.

아쉽게도 사형확정자들이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와 생각들을 이 보고서의 형태로 소화하지는 못했으나, 이후 다른 형식으로 보다 폭넓게 소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연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교정본부와 교정기관의 담당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분들의 수고와 배려를 통해 원활하게 사형확정자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쉽게 접하지 못할 귀중한 자료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사형확정자들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주신 교정위원들과 실무담당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분들의 다양한 말씀 역시 이후 다른 형식으로 함께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책임자로서 함께한 연구진들에게도 감사와 미안함을 느낀다. 촉박한 일정으로 여러 도시의 교정기관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를 기꺼이 따라 주었으

ii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연구에 임해 주었다. 이들의 노고가 이 보고서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연구책임자의 부족함에 기인한다.

비록 부족한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이 연구는 사형확정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게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살아오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이었다. 비록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로서 사형이라는 형을 선고받고, 오랜기간 교정기관에 수용될 수 밖에 없는 사형확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이다. 사형이라는 제도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든, 그리고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든 이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위원 박 형 민



목 차

국문요약	1
------------	---

제1장 박형민

서 론	7
-----------	---

제2장 김대근

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	13
--------------------	----

제1절 사형확정자의 의의	15
---------------------	----

제2절 사형확정자에 대한 국제 규범 개관	15
------------------------------	----

1.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 규범 개관	15
----------------------------	----

2. 사형확정자에 대한 외국 입법례 개관	18
------------------------------	----

제3절 사형확정자의 처우: 「형집행법」을 중심으로	23
-----------------------------------	----

1. 「형집행법」의 의의	23
---------------------	----

2. 사형의 확정부터 집행까지의 절차	24
----------------------------	----

3. 사형확정자의 처우 일반	28
-----------------------	----

4. 일반 기결수 및 미결수와의 차이	34
----------------------------	----

제3장 박형민

사형확정자의 시설 내 생활 실태	35
-------------------------	----

제1절 주요일과	37
----------------	----

제2절 수용환경	42
제3절 인간관계	49
제4절 수용시설 생활 중 원하는 것	53
제5절 출역	55

제4장 박형민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특성 59

제1절 정서적 특성과 일상적 두려움	61
제2절 종교의 역할	67
제3절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	72
제4절 사형에 대한 불안감	79
제5절 사건당시 처벌 생각	90

제5장 박형민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교정공무원들의 인식 93

제1절 사형확정자들이 느끼는 어려움	95
1. 경제적 어려움	95
2. 미결수들과 함께 수용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관계의 어려움	96
3. 언론 보도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99
제2절 사형 확정자 처우에 있어서 교정 직원들의 어려움	100
1. 교정교화의 어려움	100
2.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	101
3.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음	102
4. 자살 우려	103

제3절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교정교화의 의미	104
제4절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	108

제6장 박형민·김대근

맺음말	113
참고문헌	123
Abstract	125



표 차례

[표 1] 사형확정자 면접 조사 주요 내용	12
[표 2] 수형자 지위에 따른 비교	34

우리나라는 사형을 제도로서는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에 대한 입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강력사건이 발생하거나 관련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사형 집행 등에 대한 여론이 발생하여 사형제도는 학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있는 이슈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는 사형제도와 관련된 법리적 논쟁, 철학적 논쟁은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형제도와 관련된 다수의 학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에대한 실증적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

'사형수'라는 단어는 현행 법상의 법률 개념은 아니다. 구 「행형법」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정식 명칭이 없어 사형수라는 단어로 통용되고는 했으나, 2007년 12월 21일 구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면서 "사형확정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처음 개정 당시에는 "사형확정자"를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2016년에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 최종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다만 그 법적 성격은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결수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실질이 수형자로서 기결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2008년의 개정을 통해 사형확정자의 수용지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제11조)라고 명시하였다. 사형확정자는 원칙적으로 독

2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거수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살방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거수용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형확정자를 처우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교화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2008년 개정된 「형집행법」에서는 사형확정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다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접견 및 서신수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이후 2019년 개정에서 제41조를 통해 사형확정자도 변호인을 접견할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2008년 이전에도 사형확정자는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심리상담 또는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에 사형확정자에 대해서도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되었다.

사형의 집행 및 시기와 관련하여 주된 내용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있다. 사형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사형이 선고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벌의 집행자인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464조). 이후 사형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465조), 사형의 집행을 명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다(제463조).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그 실질은 기결수와 같다. 원칙적으로 기결수는 참관이 가능하고, 처우에 따라 접견 횟수 내지 전화통화를 달리할 수 있다. 교정 목적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편 신분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 참관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접견권 등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매일 접견이 가능하다. 또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받거나 작업을 할 수 있다.

반면 사형확정자는 공식적으로 미결수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받을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는 기결수의 실질을 갖기 때문에 미결수에 비해 접견이나 전화통화 등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는다. 사형확정자에 대해서는 기결수와 같은 '처우급'을 나누

지 않기 때문에 교정성적에 따른 처우를 달리 받을 여지가 없다.

사형확정자의 시설 내 생활 실태

많은 사형확정자들은 교정기관에서 지정한 기상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오전 일과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많은 이들은 아침식사 전까지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곤 하였고, 아침식사 전까지 종교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스케줄에 따라 하루 일과를 바쁘게 보내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무료한 시간이 주어지면 괴롭다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독서, 필사, 편지쓰기, 작업 등 무엇인가를 하면서 괴로운 생각할 시간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가끔 작업이 끝난 늦은 오후나 저녁 식사 이후에는 조금 여유롭게 지내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는 TV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이른바 “잡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사형확정자들의 거실 환경은 교정기관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출역 없이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징역형을 받은 수용자와 혼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기관도 있었다. 독거 수용과 혼거 수용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별로 매우 상이하였다. 혼거를 선호하여 만족하는 이도 있는가 하면, 독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혼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인 이도 있었으며, 독거 수용이 마음 편하다는 이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독거를 선호하는 사형확정자가 다소 많았었는데, 출역없이 하루 종일 독거를 하는 경우보다는, 낮 일과시간에 출역을 하고 이후 시간에 독거를 하는 것을 특히 선호하였다.

혼거를 선호하는 경우 혼자 있을 경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예를들어 TV 등을 시청하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소리내어 웃는 등의 감정 표출이 가능하지만, 혼자 있으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감정표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형확정자의 생활 중 중요한 부분은 운동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독거를 하는

4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경우 하루 중 유일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며, 다른 사람을 멀찌감치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사형확정자들이 출역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과를 보낼 수 있었다. 작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징역형으로 수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사형확정자들은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사형확정자들의 수용생활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다른 수용자들이 자신을 사형확정자(이른바 “최고수”)라는 이유로 선입견을 가지고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들과의 갈등 경험도 많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사형확정자는 법적으로 미결수이므로 많은 사형확정자들이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이 혼거할 경우 기관 특성상 미결수와 같은 방을 써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 때 사형확정자들은 교정 기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 미결수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퇴소하거나 조만간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사형확정자들은 미결수들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많은 사형확정자들은 수용생활 중 여가를 ‘잡생각’없이 보낼 수 있는 취미활동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형확정자들은 유기수 또는 무기수와는 달리 직업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인문학 강좌, 예술 강좌 등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사형확정자는 형식적으로 미결수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결수보다 오랜 수용생활을 해야만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결수라는 이유로 직업교육과 인문교육 등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이들이 교정기관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였다. ‘사형확정자’라는 지위가 생기면서 일부 교정시설에 한해 출역이 가능해진 것은 다행한 일이나, 말 그대로 출역만 가능하지 그 이외의 교정 교화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출역은 사형확정자들이 교정 기관 내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생산적인 활동이다. 출역은 방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돈을 벌 수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가족간의 관계가 끊어져 가족이 영치금을 넣어주지 않는 경우, 작업을 통해 교정기관 안에서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특성

사형확정자들은 교정 기관 밖의 평범한 생활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 처우의 불확실성, 반복되는 수용생활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답함과 무기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을 느낀다.

사형확정자들의 교정 기관 밖 마지막 기억은 사건 당시와 이로인한 재판 당시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은 계속 변화하면서 사형확정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형확정자 자신은 사라져간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되지 않는 상황,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지만 아직 사형제도가 남아 있는 상황 등 사형확정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불확실성은 너무나도 많다.

아울러 매일 반복되는 수용생활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답함,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이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모든 사형확정자에게는 아니지만, 사건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나 사건에 대해 생각하면 죄책감을 경험하여 괴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들의 죄책감은 가해자의 트라우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피해자나 사건 당시를 떠올릴 때 정신적,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형확정자들은 교정시설 밖에서 점차 잊혀져 가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밖에 있는 가족과 친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사형확정자들에게 종교는 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적 위로는 그들이 사형의 두려움을 견뎌내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이 교정 기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희망없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해 주는 것이다. 이들의 종교활동은 이른바 ‘자매’라고 불리우는 교화위원들과 함께하게 되는데, 교화위원들과의 만남은 사형확정자들이 만나는 외부사람의 대부분이며, 따라서 가장 많은 외부접촉은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많은 사형확정자들은 여유시간이 날때마다 기도, 경전읽기, 필사 등 종교적인 행위로 빈 시간들을 채우고 있었다. 사형확정자들이 행하는 종교적 활동 중 ‘필사’라는 활동이 있다. 필사는 성경 또는 불경을 자신의 손으로 그대로 베끼는 것을 말하는데,

6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이들은 종교적 신심을 강화하기 위해 경전을 베끼는 것이지만, 아울러 무료한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면서 ‘잡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사형확정자들은 자기 자신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였다. 잊으려고 노력하거나 어렵게 견디고 있는 사건의 기억을 되살리게 함으로 교정기관 내에서의 생활이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사건에 대한 보도 뿐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 일반적인 사형제도에 대한 보도 등의 언론보도들도 사형확정자들을 불안하거나 괴롭게 만들기도 한다.

아울러 언론보도의 괴로움은 언론이 자기 자신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괴롭힌다는 것에 있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경우, 주변인들의 비난으로 인해 가족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사형확정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와 연관하여 사형확정자에 대한 부적절한 취재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출하였다.

사형제도에 대한 태도나 사형제도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사형이 집행된지 20년이 지나 실질적 폐지가 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여전히 제도로서의 사형이 남아있다는 점 때문에 언제든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형확정자들도 있었던 반면, 사형 집행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죽을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두렵다는 사형확정자들도 있었다. 한편 사형의 집행여부나, 앞으로의 수형생활의 고통 등에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현재의 삶에만 충실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형확정자도 있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형벌의 한 형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일부 사형확정자는 죽음보다는 교정시설 안에서라도 살아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사건 당시 사형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각, 또는 사건으로 인해 받을 처벌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형확정자들은 사건 당시 처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술에 취했거나 화가나서 정신이 없었거나, 잡힐 생각을 하지 않아서 처벌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처벌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고 대답한 사형확정자도 사건 당시가 아니라,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처벌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제 1 장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서 론

박 형 민

우리나라는 사형을 제도로서는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에 대한 입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강력사건이 발생하거나 관련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사형 집행 등에 대한 여론이 발생하여 사형제도는 학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있는 이슈임에 틀림없다. 사형을 선고하거나 사형을 집행해야한다는 여론이 등장하는 것은 사형제도가 강력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형제도의 존재와 강력범죄의 발생간의 실증적인 관계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형법」을 비롯한 17개의 법률에서 84개의 항목에 대하여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형법」상 여적죄(제93조), 「군형법상」 군사반란죄(제5조)가 있다. 정부가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연합뉴스, 2018. 2. 21 자). 마지막 사형 집행 후 사망한 사형수는 11명으로, 5명은 자살을 선택했고, 6명은 질병으로 사망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정부에 ‘사형제 폐지 국제 의정서’에 가입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이 의정서에는 사형 집행 중지 및 폐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나 법무부 등 유관부처들은 올해 2월 국민여론과 법 감정 등을 이유로 “즉각 이행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힌 상태이다(중앙일보, 2019. 6. 13. 자).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은, 한국갤럽이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처음 실시한

10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1994년에는 찬성이 70%, 반대가 20%로 찬성이 압도적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03년에는 찬성이 52%, 반대가 40%로 격차가 대폭 감소하였고, 2004년 유영철 사건 때는 찬성이 66%로 증가하였다(조선일보, 2012. 9.11. 자). 2019년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7%로, '현재처럼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 37.9%보다 높은 상대이며,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 7.8%에 불과했다(리얼미터, 2019).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사형제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조사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조사는 강력범죄의 발생 등 연관된 사건 직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의견은 강력범죄의 발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라 현재 사형확정자는 민간인 56명, 군인 4명 등 총 60명으로 6개 수용시설에 분산되어 수용되어 있다(김대근, 2019).

사형확정자는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와는 다르고 또 예정된 사형을 집행할 때까지 주로 그를 수용하는 데 그치므로 수형자처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우를 할 수도 없지만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단순한 수용 상태로 방치하는 것 역시 인격권 보호 및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신양균, 2012:154). 따라서 이 연구는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사형확정자들의 삶과 경험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는 사형제도와 관련된 법리적 논쟁, 철학적 논쟁은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형제도와 관련된 다수의 학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이 연구는 사형확정자들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통해 향후 논의를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형확정자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사형확정자들의 처우에 대한 시사점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형확정자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단지 사형확정자들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그에 대한 형벌로서 사형확정자라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들은 교정기관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삶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형이라는 제도를 보다 깊이있게 성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사형확정자들과의 면접과정에서 나타난 그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어쩌면 사형확정자들의 진술이 사실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들의 관점에서 사건과 감정이 재구성되어 말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삶을 이들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교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형확정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알리고 면접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후 면접에 동의한 총 32명의 사형확정자들을 대상으로 각 2회의 면접을 실시하였다¹⁾. 각각의 면접은 교정기관의 일정과 사형확정자들의 상황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이루어 졌다.

1차 면접에서는 이들의 주요 일과, 수용환경, 인간관계, 종교생활, 정서생활, 가족관계,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비구조화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면접에서는 1차 면접에서 진술된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듣고자 하였고 역시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진술의 구성은 진술자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뒤에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지만, 사형확정자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이야기가 언론 등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으며, 특히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불이익을 끼치게 될까봐 극히 염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1) 단, 1명의 사형확정자의 경우, 1차 면접이 계획된 날에 병원 치료 일정이 있어 1번의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또다른 1명의 사형확정자는 2차 면접이 예정되어 있던 날에 징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1차의 면접만 가능하였다.

12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 [표 1] 사형확정자 면접 조사 주요 내용

-
- ▶ 주요 일과 : 하루 일과, 주중 일과, 월간 일과
 - ▶ 수용 환경
 - 수용상황에 대한 만족도
 -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
 - ▶ 인간 관계
 - 다른 수용자와의 관계(일반수용자, 사형확정자, 수용동도우미 등)
 - 교화위원/교도관과의 관계
 - 과거와 현재의 관계 변화
 - ▶ 종교생활
 - 종교 유무
 - 종교 경험
 - 종교생활을 통한 변화
 - ▶ 정서 생활
 - 취미활동
 - 주된 고민 내용
 - ▶ 가족관계
 - 가족 접견 및 접촉
 - 과거와 현재의 가족 관계 변화
 - ▶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일반적인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
 - 본인 형량에 대한 생각
 - ▶ 기타
 - 미래 계획
 - 제도 개선 의견
 - 그 밖에 사형확정자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내용
-

제 2 장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

김 대 근

제2장

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

제1절 | 사형확정자의 의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사형수’라는 단어는 현행 법상의 법률 개념은 아니다. 구 「행형법」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정식 명칭이 없어 사형수라는 단어로 통용되고는 했으나, 2007년 12월 21일 구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로 전부 개정하면서 “사형확정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처음 개정 당시에는 “사형확정자”를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2016년에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 최종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들의 법적 성격은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결수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실질이 수형자로서 기결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있다.

제2절 | 사형확정자에 대한 국제 규범 개관

1.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 규범 개관

가.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적 현황

사형 폐지에 대한 입장을 ‘사형제 전면 폐지’, ‘극단적 범죄를 제외한 폐지’, ‘집행

폐지', '사형집행국'으로 범주화해보자.²⁾ 2008년 말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전면 폐지한 92개국, 전쟁 범죄 등 일부 극단적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제를 폐지한 10개국, 최근 10여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36개국, 사형을 존치하는 59개국이었던 것이, 2016년 10월 기준 사형제 전면 폐지국은 106개국, 극단적 범죄를 제외한 사형 폐지국은 7개국, 사형 집행을 폐지한 국가는 총 29개국, 그리고 사형집행국가는 56개국이다. 사형 제도의 폐지 내지 축소(미집행)가 국제적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규범

인간 생명의 존중을 천명한 국제 규범의 대표적인 문서는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며,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제1조 및 제3조)를 필두로, “모든 사람은 자기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생명의 박탈, 즉 사형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시도는 1966년 유엔에서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이다. 동 규약 제6조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제1항)는 선언과 함께, 제2항 이하에서는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일지라도 그 선고와 집행은 엄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항 제4항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사형선고에 대한 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고 하여 사면 및 감형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UN에서는 사형존치국가에 대해 그 집행을 유예를 요청하는 결의안인 「사형 집행을 유예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2016년에 채택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2) 김대근, [휴먼 라이츠 브리핑] '묵혀둔 숙제' 사형은 필요한 형벌인가- ⑥ 사형은 언제 정당화되는가, 프레시안, 2019.08.05.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51853?no=251853&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최종검색일: 2019.12.24.))

3)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2018, 403쪽. 이하의 내용은 동 보고서를 직접 인용한 것이다.

1. 모든 국가가 적절한 법적 처벌을 비롯한 고유의 법적 체계를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고안할 주권을 지님을 재확인한다.
2. 지속적 사형 적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3. 결의안 65/206호와 그 권고의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환영한다.
4. 사형 연도가 가능한 범죄를 축소하고 사형 적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부 국가가 취한 조치를 환영한다.
5. 국내적 의사결정을 통해 사형제로부터의 탈피 가능성에 대한 국가적 논의 및 토론을 독려하는 이니셔티브와 정치적 리더십을 환영한다.
6. 사형집행 유예를 적용하고, 많은 경우 사형제 폐지로 이어진, 점점 늘어나는 수의 모든 지역 국가의 모든 정부 차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7. 모든 국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 (a) 1984년 5월 25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1984/50호의 부록에 명시된 최소기준을 비롯하여, 사형수들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국제 기준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사무총장에게 제공하며,
 - (b) 영사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영사관계에 관한 1963 비엔나 협약 제36 조상 의무를 준수하며,
 - (c) 사형 집행에 관한 국가의 권리 등을 포함한 정보에 기반하고 투명한 국가적 논의에 기여하도록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 사형수, 사형집행 수, 항소를 통해 반복되거나 감형된 사건 수, 예정된 집행에 관한 정보 등 사형집행에 관한 정보를 성별, 나이, 인종 등과 적용 가능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며,
 - (d) 사형집행을 점차적으로 제한하고, 18세 이하, 임산부 혹은 정신적 및 지적 장애를 가진 이에게 사형 연도를 제한하며,
 - (e) 사형연도가 가능한 범죄 수를 축소하고,
 - (f)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 절차와 모든 절차상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사면 혹은 감형 신청을 위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며,
 - (g)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사형집행 유예를 도입한다.
8. 사형제 폐지국가에 이를 재도입하지 않고 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독려한다.
9. 사형집행 유예국에 이를 유지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도록 독려한다.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 의정서 미가입 및 미비준국에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가입 및 비준을 고려하기를 요청한다.
11. 사무총장은 73차 총회에서 본 결의안 이행에 관하여 보고하길 요청한다.
12. 73차 총회에서 이 문제를 '인권 보호 및 보장'이라는 의제 하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결정한다.

더 나아가, UN 경제사회이사회는 결의안 1989/64를 채택하여, “회원국들이 안전장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더 나아가 사형수들의 권리 보호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⁴⁾

4) Penal Reform International,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Making Standards Works), 2007, 88-90쪽

18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 (a) 사형 선고가 가능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는 모든 절차단계에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피의자에게 변호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장소를 다른 범죄사건 이상으로 제공한다.
- (b) 사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 관용적 처분이나 사면을 위한 규정과 함께 의무적인 상소절차를 규정한다.
- (c)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될 수 있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설정한다.
- (d) 복역단계에서 혹은 사형집행 단계에서 사형수가 정신지체나 심각한 정신능력 저하를 보일 경우 사형을 취소한다.

2. 사형확정자에 대한 외국 입법례 개관

가. 영국의 사형확정자에 대한 규정(「형집행법」, 1952년)

영국의 사형확정자에 대한 규정은 1952년의 「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19조

- ① 주의 치안판사는 그 주에 있는 교도소 및 주 내에서 행해진 범죄로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가 있는 교도소를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교도소 및 수용자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교도소장이 보관하는 방문자 장부(the visitors book)에 교도소의 상태에 관한 소견 또는 폐해에 대하여 기재할 수 있다.
- ② 전 항의 규정은 교도소의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용에 대하여 그 수용자와 연락을 취할 권한 또는 사형선고를 받은 수용자를 방문할 권한을 치안판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⁵⁾

나. 캐나다의 사형확정자에 대한 규정(「교정 및 조건부석방법」, 1992년)

캐나다는 「교정 및 조건부석방법」(1992년)에서 사형확정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정 및 조건부석방법」 제107조

- ① 전국가석방위원회는 본 법, 주 교도소 및 교정원법, 수형자이송법 그리고 「형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속 관할권 및 무조건의 재량권을 가진다.
 - (a)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
 - (b) 수형자의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을 종결시키거나 취소하는 것. 이 경우에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

5) 법무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2012, 91쪽.

의 일시정지의 결과로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거하여 그 수형자가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 (c)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또는 수형자의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일시정지, 종결 또는 취소를 철회하는 것,
- (d)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위임된 수형자와 관련한 심리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 (e) 다음의 어떠한 형으로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를 허가 또는 허가한 결정을 철회하는 것, (i) 필요적 양형으로 과해진 종신형 또는 사형에서 감형된 종신형 (ii) 부정기형 (iii) 제1부록 또는 제2부록에서 정하는 범죄에 의한 형⁶⁾

한편 동법에서는 사형확정자에 대한 가석방의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20.3조 「형법」 제745조, 「국가방위법」 제140.3조 제2항 또는 「전쟁범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가 추가형을 받은 경우, 그자의 전면적 가석방의 자격취득일은 다음의 날보다 늦어서는 아니된다. (a) 형을 복역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경우, 형을 받은 날로부터 15년을 복역하고 종료한 날 (b) 형 또는 제139조 제1항의 형을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가 가석방자격을 얻을 수 있는 날짜가 변동되는 추가형을 받은 경우, 추가형을 받은 날로부터 15년을 복역하고 종료한 날 (c) 형 또는 제139조 제1항의 형을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가 같은 날에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날짜가 변동되는 2개 이상의 추가형을 받은 경우, 추가형을 받은 날로부터 15년을 복역하고 종료한 날

제121조 ① 제102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또한 제119조부터 제120.3조까지의 규정 및 「형법」 제 746.1조 및 제761조, 「국가방위법」 제140.3조 및 「전쟁범죄법」 제15조 제2항과 「형법」 제 743.6조에 따라 법원이 발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수형자에게는 언제라도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a) 말기적 질병을 앓고 있는 수형자 (b) 구금을 계속하면 신체 및 정신상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형자 (c) 구금을 계속하면 형의 선고 시에는 합리적으로 예견하지 못했던 과도한 고통을 받게 되는 수형자 (d) “범죄인인도법” 또는 “도주범죄인법”에 의거하여 인도명령을 받아 그 인도 시까지 수용되어야 하는 자. ② 제1항 (b)호로부터 (d)호까지의 규정에는 다음의 수형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 필요적 양형으로 과하여진 종신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 또는 사형이 감형된 종신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 (b) 연방교도소에 부정기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⁷⁾

다. 중국의 사형확정자에 대한 규정(「중국인민공화국 감옥법」)

중국의 「중국인민공화국 감옥법」은 사형확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6) 법무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2012, 574쪽.

7) 법무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2012, 582쪽.

「중국인민공화국 감옥법」 제2조 ① 감옥은 국가의 형벌집행기관이다. ②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사형집행의 2년유예,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 감옥 내에서 그 형벌을 집행한다.

제15조 ① 인민법원은 사형집행 2년유예,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한 집행통지서, 판결서 등을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공간기관에 송달하고 공간기관은 집행통지서, 판결서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에 피고인을 감옥으로 압송한다.⁸⁾

제31조 사형집행 2년유예를 선고받은 수형자가 사형집행유예기간에 법률이 정한 무기징역, 유기징역으로의 감 형조건에 부합될 경우 2년의 기간만료 후 소재 감옥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감옥관리국에 감형 건의를 하여 심의한 후 고등인민법원에 제청하여 결정하도록 한다.⁹⁾

라. 일본의 사형확정자에 대한 규정(「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1) 사형제도의 유지

일본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때문에 일본의 수용자에 관련된 법률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동일한 의미인 ‘사형확정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서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고 구치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¹⁰⁾ 동법 제142조에서는 사형확정자에 대해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한다.

2) 사형확정자의 수용

사형확정자는 필요한 처우를 실시하는 시설인 형사시설에서 수용한다(동법 제3조 제4호). 일본에서는 수형자, 미결구금자,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각종 피수용자별로 서로 분리하고, 식사의 배급, 그 외의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수용자와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사형확정자는 형사시설 외에 유치시설에 유치할 수 없다(동법 제15조). 일본은 사형확정자의 수용방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거실 내 처우를 하고, 거실 외에서 처우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야 거실에서 실시한다. 이때 사형확정자의

8) 법무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2012, 986쪽.

9) 법무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2012, 988쪽.

10) 법무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2012, 729쪽.

거실은 독거실로 하며, 거실 외에서도 원칙적으로 다른 수용자와 상호 접촉을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6조).¹¹⁾

3) 사형확정자의 처우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있어서는 그 자가 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함에 유의하고, 사형확정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민간독지자의 협력을 얻어 그 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조언, 강연,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동법 제32조).¹²⁾

동법 제120조에서는 형사시설의 장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1. 사형확정자의 친족 2. 혼인관계의 조정, 소송수행, 사업유지, 그 밖에 사형확정자의 신분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대한 이해에 관계되는 용무의 처리를 위하여 접견하는 것이 필요한 자 3. 접견에 의하여 사형확정자의 심적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48조 제3항 또는 다음 절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한다고 규정한다. 그 외에도 형사시설의 장은 사형확정자와 상대방와의 교우관계의 유지, 그 밖에 접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정이 있고, 동시에 접견에 의하여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1조 형사시설의 장은 그 지명하는 직원을 사형확정자의 접견에 입회시키거나 또는 접견의 상황을 녹음하게 하거나 또는 녹화하게 한다. 다만, 사형확정자의 소송준비, 그 밖에 정당한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입회 또는 녹음 또는 녹화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 제113조(제1항 제2호 라를 제외한다) 및 제114조의 규정은 사형확정자의 접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2항 중 “1월에 2회”는 “1월에 1회”로 대체한다.¹³⁾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제66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 및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면회신청을 하는 것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에 열거하는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 2. 자기와의 관계 3. 예상되는 면회의 목적 4. 그 외 형사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 및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동 항 각 호 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면회신청서의 제출)

제67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와의 면회의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수형자 및 사형확정자 이외의 피수용자와의 면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 2. 면회를 희망하는 피수용자의 성명 및 그 자와의 관계 3. 면회의 목적 ②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수용자와의 면회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동 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 및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서신을 수발하는 것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 2. 자기

11) 법무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2012, 729-734쪽.

12) 법무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2012, 734쪽.

22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와의 관계 3. 예상되는 서신수발의 목적 4. 그 외 형사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 66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요구한 경우에 준용한다.

(4)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면회에 의하여 그 사람의 심정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피수용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서신의 수발을 하는 경우 (1) 피수용자의 친족과의 사이에서 수발하는 서신 (2) 혼인관계의 정비, 소송수행, 사업유지, 그 외 피수용자의 신분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대한 이해에 관한 응무처리를 위하여 수발하는 서신 (3) 수형자에 대하여 그 갇혀보도에 관계있는 사람 또는 그 석방 후에 이를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수발하는 서신, 그 외 서신수발에 의하여 그 개선갱생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서신 (4)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서신수발에 의하여 그 심정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서신¹⁴⁾

제139조 형사시설의 장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이 목, 제148조 제3항 또는 다음 절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 사형확정자의 친족과의 사이에 수발하는 서신 2. 혼인관계의 조정, 소송수행, 사업유지, 그 밖에 사형확정자의 신분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대한 이해에 관계되는 응무의 처리를 위하여 수발하는 서신 3. 수발에 의하여 사형확정자의 심정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서신 수발을 허가한다. 이외에 형사시설의 장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그 수발 상대방과의 교우관계 유지, 그 밖에 그 수발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고, 동시에 그 수발에 의하여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¹⁵⁾

제142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5조 제1항 및 제2항, 제139조의 규정은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형확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하여 준용한다.¹⁶⁾

4) 사형의 집행

제178조 ① 사형은 형사시설내의 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일요일, 토요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178호)」에 규정한 휴일, 1월 2일, 1월 3일 및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날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해승) 제179조 사형을 집행하는 때에는 교수(絞首)된 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고부터 5분을 경과한 후에 교승(絞繩)을 풀도 록 한다.¹⁷⁾

13) 법무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2012, 756쪽.

14) 법무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2012, 930-932쪽.

15) 법무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2012, 760쪽.

16) 법무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2012, 761쪽.

17) 법무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2012, 769쪽.

제3절 | 사형확정자의 처우: 「형집행법」을 중심으로

1. 「형집행법」의 의의

가. 「형집행법」의 의의

「형집행법」의 정식 명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으로 기본적으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구 「행형법」의 경우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 「형집행법」의 변천

개정된 바의 현행 「형집행법」은 모든 수형자들의 형을 집행하는 부분과 교정시설에서의 처우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정 전반의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또한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용자가 미성년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지나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장비 등을 추가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을 도모한다.

「형집행법」의 몇 차례 개정으로 사형확정자의 처우도 변화하고 있다. 첫째는 사형확정자의 수용에 관한 부분이다. 구 「행형법」에서는 독거수용의 대상자에 수형자만을 규정하였다고 이후 수용자로 바뀌었고,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된 이후에도 2008년의 개정을 통해 사형확정자의 수용지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제11조)라고 명시하였다. 사형확정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하지만 예외

적으로 자살방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거수용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형확정자를 처우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교화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둘째는 변호인의 접견과 재판에서의 권리가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만 변호인 접견을 가능하도록 하였다면, 2008년 개정된 「형집행법」에서는 사형확정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다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수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이후 2019년 개정에서 제41조를 통해 사형확정자도 변호인을 접견할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는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일반 수형자들의 처우 내용을 확대하여 적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 사형확정자는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적용된 것은 심리상담 또는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에 사형확정자에 대해서도 교육·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되었다. 이는 사형집행이 장기간 유보되고 있는 고려한 것이다.

2. 사형의 확정부터 집행까지의 절차

가. 사형의 확정

「형법」 제41조 제1호에서는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이 형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¹⁸⁾라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제110조 제4항의 문언상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형이 인간존

18) 대법원 1991.2.26. 90도2906.

업에 반하거나 이상한 형벌로 평가되거나 과도한 것이 아니며,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사형의 위하력을 무기의 자유형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사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서도 사형제도의 존치에 합헌¹⁹⁾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²⁰⁾고 하여 법원에서는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것이고, 가장 최근 사형의 확정선고는 2016년 GOP총기 난사 사건의 피고인이었다.²¹⁾

나. 사형의 집행

1) 사형의 집행시기 및 정지

사형의 집행 및 시기와 관련하여 주된 내용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있다. 사형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사형이 선고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벌의 집행자인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464조). 이후 사형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제465조), 사형의 집행을 명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다(제463조).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의 집행을 확정판결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19)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20)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도1240 판결.

2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2184&ref=A>. 안○○ 사건의 경우 제1심판결에서 내려진 선고이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아니고 집행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훈시규정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많다.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이 있다면 5일 이내에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466조). 이때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소권회복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을 한 경우라면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사형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465조 제2항).

하지만 사형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이후 심신장애의 회복이나 출산 후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다시 형을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69조). 이때 검사는 사형수 심신상황조회결과 사형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에 규정된 사형집행의 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하고,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 해소된 일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8조 제1항).

사형집행 정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형집행정지결정서에 의하여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형집행정지 지휘서에 의하여 형집행정지를 지휘하여야 하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와 형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실을 고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형집행정지지휘서를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형집행을 촉탁한 우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촉탁 받은 검사에게 통지하고 반촉을 구한 후 사형집행 정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사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형집행을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검사는 즉시 사형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8조).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 또는 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출장하여 임검하되, 필요한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의무관 또는 다른 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는 이 조사를 마친 후에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임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형집행정지에 관한 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

2) 사형집행의 절차

사형집행의 구체적인 절차는 「형집행법」에서 규정한다. 동법 제91조에서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사형수가 구금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사형집행설비가 없다면 검사의 지휘에 의해 집행설비가 있는 교정시설로 이송한다.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대리자(이하 '법정참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나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형은 비공개로 집행되고, 예외적으로 법정참여자 이외에 의사와 종교인이 참여할 수 있다.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은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여 사형집행에 참여한 검사와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한다(「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0조 제3항).

사형 집행은 소장이 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형집행대상이 된 사형확정자에 대한 사형집행명령서, 사형집행지위서 및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용기록부에 편철한다. 소장은 집행에 필요한 포승, 관, 수의 등을 준비해야 하고, 만약 사형수가 장기기증자일 경우 별도로 관련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후 사형장에 도착하면 법정참여자와 법정참여자의 허가를 받은 의사 및 종교인이 먼저 입장한 후 사형수가 입장한다. 참여한 검사가 인정신문과 판결문을 낭독한 후 사형확정자의 유언을 듣고 희망하는 경우 종파별 교회를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66조에서 교수형으로 사형의 집행을 규정하기에 사형집행담당교도관은 사형확정자의 발을 묶고, 머리에 용수를 씌운 후 매듭이 목의 동맥에 닿도록 포승을 걸어두고 사형장

교수대에 사형수를 대기시킨다. 교도관이 집행단추를 누르면 사형확정자의 몸이 떨어지고 교수형에 처해지는데, 소장이 시신을 검사하고 검사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11조). 사망 후에는 사형장에서 입관하고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하고,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화장(火葬)하여 봉안하거나 임시로 매장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128조).

3. 사형확정자의 처우 일반

가. 수용

1) 구분수용

사형확정자에 대한 처우 일반 또한 「형집행법」에서 규율한다. 먼저 「형집행법」 제11조에서는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구분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의 「형집행법」으로 사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사형확정자의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형확정자의 거취를 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사형확정자는 미결수도 아니고 기결수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오래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집행대기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8년 개정에서 최초로 사형확정자에 대한 수용문제를 명문화시켰다.

구 「행형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독거수용의 대상도 '수형자'²²⁾로 한정하였다가, 1995년 개정에서 '수용자'²³⁾로 넓어졌고, 구 「행형법」을 전부 개정하여 지금의 「형집행법」으로 바뀐 이후에도 1년여 동안은 사형확정자의 수용문제는 직접적인 법

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수형자'는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적용 없이 다른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했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0조

- ① 사형확정자는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용한다.
1. 교도소: 교도소 수용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 교도소에서 교육·교화프로그램 또는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구치소: 구치소 수용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 교도소에서 교육·교화프로그램 또는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고, 구치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형집행법」 제57조 제2항 제3호의 일반 경비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중경비시설에 준한다고 규정한다.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형확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51조).

2) 거실지정

「형집행법」 제14조에서는 일반적인 수용자의 수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형확정자도 수용자로서 독거수용한다(동법 제89조 제1항). 사형확정자의 경우 독거수용의 예외로 자살방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형집행법」 제15조),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동법 제89조 제2항). 「형집행법」에서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에 대해 참관을 금지하고 있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참관 금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인권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자와 같이 무죄 추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참관 금지에 대한 명확한 입법 목적을 알지는 못한다. 다만 사형확정자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지나친 사회의 관심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된 수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라 여겨진다.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 제4항). 하지만 같은 법 제153조 제2항에서 예외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붉은 색이 아닌 일반 수용자와 같은 색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실제로 일부 교도소에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작업장 내에서 사형확정자와 다른 사용자 사이의 위화감이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함이다.

나. 일반적 처우 사항

1) 접견 및 전화통화

사형확정자는 매월 4회 접견이 허용된다(「형집행법」 제109조). 하지만 소장의 권한으로 접견의 횟수를 늘리는 것도 가능한데, 「형집행법」 제110조에서는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을 수수하는 것(「형집행법」 제84조), 그 밖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권리행사(「형집행법」 제85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도 있다. 사형확정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때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이 가능하다(「형집행법」 제41조). 2008년 개정으로 사형확정자에 대해 변호인 접견이나 변호인과의 서신을 수수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2019년 개정에서는 수용자

들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인을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이 가능케 한 이 조항은 미결수용자의 경우 아직 확정판결을 받기 전의 자로서 재판 계속 중이거나 재판을 준비 중인 경우이기에서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확정판결을 받은 사형확정자에게도 미결수용수에 포함하여 이 권리를 인정한 것은 의미있다 볼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조에서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도 있다.

2) 상담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상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상담시기, 상담책임자 지정, 상담결과 처리절차 등에 관련된 사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6조의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상담책임자에 대해서는 감독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 수시로 개별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신속한 고충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담책임자가 상담한 내용은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사형확정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 실시 및 작업

「형집행법」 제90조에서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고,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소장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종교상담, 심리치료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형확정자는 이러한 교화프로그램 등에 우선적 고려대상이 되고, 외부 종교위원과의 자매결연도 진행할 수 있다.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 외에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 소장은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작업 시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색상은 다른 수용자와의 괴리감해소 등을 위해 소장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반수용자와 같은 색상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는 언제든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에게는 작업이 부과된 수형자들의 권리나 의무규정들(「형집행법」 제71조 내지 제76조)과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0조)가 금지된다.

교육·교화 프로그램, 작업 등을 원하는 사형확정자의 처우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교화프로그램은 수형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다. 사형확정자의 경우 감형이 되더라도 무기징역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과연 사형확정자들에게는 그 목적과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4) 일반적 처우조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해서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고(「형집행법」 제22조), 수용자의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제23조). 이 외에도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의류·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제24조), 교정시설에 영치가 가능하지 않은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물품의 종류·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그 밖에 영치할 가치가 없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휴대금품을 영치할 수 있고(제25조), 소지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소지할 수 있다(제26조). 이러한 일반

수용자에 대한 처우 규정은 사형확정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집행법」 제27조에서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일반 수용자의 경우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를 모두 고려하여 금품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사회복귀에 대한 해당성이 없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가 아니면 금품교부를 허가해야 한다.²⁴⁾

5) 권리의 구제

한편 사형확정자들도 일반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종교행사의 참석(「형집행법」 제45조 제1항), 비치도서의 이용(제46조),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제48조 제1항), 문예·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집필(제49조 제1항) 등의 권리를 갖는다. 또한 수형자들의 의무사항인 금지물품의 소지제한(제92조),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신체 검사 등(제93조),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제94조),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제95조, 제96조), 강제력의 행사(제100조), 수용을 위한 체포(제103조)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사형확정자일지라도 권리가 침해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이의제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²⁵⁾은 물론이고, 「형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의 방법은 소장과의 면담 신청(제116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하는 청원(제117조), 정보공개청구(제117조의 2)을 들 수 있다. 한편 「형집행법」은 이러한 때 수용자가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등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도 있다(제118조).

24) 신양균, 사형확정자의 처우, 법조, 2012, 169-170쪽.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4. 일반 기결수 및 미결수와의 차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그 실질은 기결수의 것과 같다. 때문에 사형확정자의 지위를 보다 극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결수 및 기결수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기결수는 참관이 가능하고, 처우에 따라 접견 횟수 내지 전화통화를 달리할 수 있다. 교정 목적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편 신분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 참관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접견권 등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매일 접견이 가능하다. 또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받거나 작업을 할 수 있다.

반면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참관할 수 없지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혹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받을 여지가 있을 뿐이다. 한편 기결수의 실질을 갖기 때문에 미결수에 비해 접견이나 전화통화 등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는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 사형확정자에 대해서는 기결수와 같은 '처우급'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교정성적에 따른 처우를 달리 받을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표 2] 수형자 지위에 따른 비교

	기결(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참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접견횟수	처우급에 따라 달리 적용(4회~매일)	매일 1회	월 4회
전화통화		소장허가 시	월 3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	의무사항	신청에 따라	신청 없이도 가능
작업부과	신청사항 아님	신청에 따라	신청에 따라
시설의 설비 및 계호	S1~S4	일반경비시설(S3)에 준함	일반경비시설(S3) 또는 중경비시설(S4)에 준함

제 3 장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사형확정자의 시설 내 생활 실태

박 형 민

제3장

사형확정자의 시설 내 생활 실태

제1절 | 주요일과

많은 사형확정자들은 교정기관에서 지정한 기상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오전 일과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많은 이들은 아침식사 전까지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곤 한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평균 5시 반에서 6시 정도요.

(다섯 시 반에서 여섯 시. 아침식사는 보통 7시쯤 하시고, 식사 전까지는 보통 뭐하시나요?) 그냥 책 봐요.

(책 보시고, 그러면 오전시간에 아침식사 하시고, 점심시간까지도?) 잘 때까지 책봐요. 독방에 있으니까 뭐 누구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책밖에 없어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희는 저 기상시간이 원래는 6시에 일어나기로 되어있는데, 6시 소등을 했다가 켜는데 보통 저희 형제들은 저 같은 경우는 5시에서 5시 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저희는 최고수들을 형제라고 하거든요? 형제들은 좀 여기 오래 살다 보면은 귀가 조금 많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아, 이건 직원 이구나. 배식차구나.' 요런거 할 정도로 작은 소리에도 깨요. 직원들이 5시 반에 인제 야근근무자하고 교대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이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대부분 독거방에 있다 보니까 그 소리에 깨죠. 귀마개를 해도 안그래도 바로 제 옆방에 직원들 쓰시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새벽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생각 없이 물을 확확 내리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깨죠 일단은. 대부분이 형제들 보면 고 시간에 깨더라고요. 시간들이. 빨리 깨는 형제들은 5시에도 깨고. 보통 지금같이 화성이나

이런저 자꾸 ○○○형같이 기사 나고 그러면 한 새벽 세시까지 잠을 못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끼리도 이제 가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을 허잖아요? 여기 교도소는 여섯시 반이 기상시간인데, 대부분 30분 빨리 일어나요. 왜냐, 씻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침에 씻고 인자, 밥이 오지 않습니까? 그른 음식 해서, 제가 인자 다 차려줘요. 밥 먹고 그릇 싹 씻어. 그러면 2-30분 걸려요잉. 그른 또 운동 나가잖아요? 운동하고 들어와서 세탁 물 같은 거 있으면은 ‘주세요’. 기냥 수돗물 틀든 물 잘 나오니까. 세제 넣어가지고 막 밟아서 팍 한 담에 짜서 널어나붙면 얼마나 시간 잘 갑니까. 시간 잘 가지,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지. 잉? 인자 점심이 인자, 열두시 한 시 까지는 인자 휴식시간 아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두시 되면 티브이 나와요. 드라마도 나오고, 교화방송도 나오고 인자, 텔레비 보고. 근께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지루하다, 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나는 바빠. 그르른 인자, 인자 그 오락. 장기 바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인자 바둑이 한 2급 되거든요. 그르니까 또 가끔 바둑 잘 두는 사람 들어 오든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나는 오락 같은 것도 엄청 잘 해요. 나를 이길 사람이 없지. 그르지만 은, 인자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침엔 인자, 여기 교도소 규정은 여섯시인데, 제가 인자 다섯 시 정도 되면 일어나요. 제가 그, 수용 되어있는 방은 고령자들 실이거든요. 65세 이상. 인자, 생활은 인자, 공간이 좀 좁잖습니까. 좁은 그것인데. 지금 인자 수용인원이 좀 많아요.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서 배식준비하고 일단 씻고요. 배식준비 하고 나서 저희는 커피 통이라고. 배식오기 전에 통을 또 걷어요. 사동 청소부 분들이 그분들이 커피통 걷어가고 밥상 깔아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한 사수님이 저희 식수라고 물을 준다고 또 가서 큰 통 가지고 가서 60명이 한 사동에 있으니까 큰 통 두 개 가져가서 물 떠와서. 근데 대부분 그 물로는 안먹고요. 솔직하게 대부분 씻고, 파는 생수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커피물 주니까, 커피물 오투기 커피 물을 식혀서 그걸로 그냥 통에 따라놔서 먹죠. 왜냐하면 생수가 들어온지 얼마 안됐거든요. 저는 낯설더라고요. 산지 오래되다 보니까 야 이거 살다보니까 생수도 다 들어오고.. 생수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생수 먹기가.. 가격은 저렴한데. 여름에는 두병 타는데 평일에는..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병이에요. 2리터 짜리. 일주일에 두 번 구매, 한번은 세 번 구매 번갈아가면서. 그런식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고 지금 7시에 밥 먹고. 7부터

또 라디오가 나와요. 라디오 최화정의 그 나오고 7시부터 밥 먹고 7시 반쯤 설거지 하고... 그리고 나면.. 아 7시 반에 설거지 끝나고 나면 커피물을 주시고. 8시 되고, 8시부터 20분까지는 8시 20분은 점검이 오거든요. 아침에 점검이 오다보니까 그 시간까지는 성경말씀 보던가 개인적인 것들, 전 날 못했던거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보면 8시20분에 점호 끝나고 나면 쓰레기 분리수거 하고 그리고 나서는 개인 시간이 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 많은 사형확정자들은 아침식사 전까지 종교행위를 하기도 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지?) 하루일과는.. 새벽 4시에.. 저는 4시에 일어나요. 저는 일찍 자요. 저는 아홉시.. 아홉시 되면은 이제 취침등이 되가지고 더 다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 4시에.. 일찍 자니까.. 9시에 자니까 뭐 일찍 4시에 일어나서 주임님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늘 지나다니시면서 좀 보시고 그런데.. 일어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하고 내가 지은죄 속죄하고 ... 그때 지은 죄 속죄하고 성경보고 이제.. 그.. 큐티 책 보고.. 그다음에 이제 편지쓰고 예.. 아침에는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좀 굴려요.. 4시부터 여섯시까지.

(몇시에 일어나시는지부터 여쭙볼게요.) 제가 있는 사는 데요. 맨날 앞서 면담 하셨었죠. 그 사람들하고 사는 그 방식들 좀 틀려요. 저는 외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사동 있어요. 기독교 사동 있고 천주교 사동 있고 불교 사동 있어요. 기독교 사동 아침에는 새벽 기도 해야 돼요. ... 아침 다섯시 십분쯤 일어나셔서. 출역하기 전까지 새벽기도를 해야 되고. 예, 보통은. 새벽기도 하고, 예배해야 되고, 찬송해야 돼요. 예배... 너무 시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아침 몇 시에 기상하시고, 출역 전까지는 뭐하시나요?) 아. 저 개인이요? 다섯시 반에 일어납니다. 세면하고 그리고 또... 2시간 정도 사경을 해요. 거시기..불교거든요. 법화경을 쓰고 있는데 2시간 정도. 한자 공부겸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의 스케줄에 따라 하루 일과를 바쁘게 보내고 있었다. 이들이 바쁜 하루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무료한 시간이 주어지면 괴롭다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독서, 필사, 편지쓰기, 작업 등 무엇인가를

하면서 괴로운 생각할 시간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는 또 되게 바빠요. 바쁘게 살아요. 어떻게 바쁘게 사냐면은 이 나쁜놈들이, 나쁜놈들이 편지를 징, 징그럽게 많이 해요. 이제 편지를 해, 오는 사람들이 장기수들이예요. 그니까 이제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갑다. 왜? 어저께 또 편지를 또 한 통 받았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 본 사실도 없고 만난 사실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책에 내 이름이 나오고 내 기사가 나왔다고 형님, 제 나이가 마흔 여덟입니다. 형님 기사를 보고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봤, 편지를 봤어요. 작년에 받은 편지인데, 수술했어요. 엄청 병, 아프고 막 도움을 받고, 이려고 나갔는데 글썄 내가 잘 살아라 요렇게 살고 믿음만 해서 살고 요렇게 살아라 했는데 10개월만인가? 11개월만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수원, 수원구치소, 인천인가? 있으면서 편지가 또 왔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숙원도 없이 그냥 안부편지 합니다 이래가지고 편지가 왔는데. 제가 편지가 오는 부분에 대한 건 무조건 답장은 다 해주거든요. 그게 바빠요.

판 사람 생각 거의 못하고. 시간 하다 보니까. 일 안 하면은 운동 시간 빼고는 그렇게 판 생각 없어.

(일과시간에 주로 어떻게 시간 보내세요?) 일과시간에는 운동시간이 30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필사도 가끔씩 하고.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성경필사시간을 한 시간 잡아놓고. 또, 어쩔 때 또 가끔씩 저녁에 9시 되면은 이제 또 생각나는 시간이 만약에 있으면은 따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일기식으로 적는 그런 시간도 한 번 가져보고. 왜냐면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너무 잡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많이 힘들거든 저희같은 경우는. 긴 시간을 여기서 보내야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적어가면서 좀 마음에 위안을 삼으려고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작업이 끝난 늦은 오후나 저녁 식사 이후에는 조금 여유롭게 지내기도 한다. 그래도 이 시간에는 TV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이른바 “잡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작업할 때 일에 집중 하시고, 다른 생각은 별로 안 하시고?) 판 사람 생각 거의 못하고. 시간 하다 보니까. 일 안 하면은 운동 시간 빼고는 그렇게 판 생각 없어.

(저녁식사 이후에는요?) TV나오고.. 재미없으면 책보고

(주로 책 보시는데 어떤 책들을 보시나요?) 바둑 책이나 일반 소설 책이나 판타지 소설 책.

(세시 이십분 까지 일하시고 다섯시 입방하시고. 입방하신 후에는 어떤?) 또 들어가면 점검하고 식사하고 티브이 시청하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아홉시까지 있다가 취침하고.

(그러면 또 새벽 4시반에 일어나시고. 잠이 별로 없으신 편인가봐요?) 좀 일찍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티브이 시간이 아홉시 끝나면 끝나기 전에 뉴스 끝나면 자거든요 일찍.

(작업 끝나고 저녁엔 무슨일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인자 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인자 사람들하고 조금 소통을 해야 하니까 한 3시 반정도 작업이 끝나면은 인자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인자 장기 두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장기 바둑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고 바둑은 한 5급 정도 하고 장기는 한 2.3급 정도 하는데. 아유 자꾸 그러다보니까 뜨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좀 배울라고. 아 그러다보니까 한두판씩 뒤줘야되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또 금방 갑니다. 또 인자 그러면 입실할 시간이. 5시에 입실하거든요. 그러면 입실 대기 하고 있다 입실 하고 방에 들어가요 인자. 그러면 방에서 또 점검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점검을 하고 나면 그 때부터는 배식을 하고 나면 다섯시 반이면 인자 배식 운반이 옵니다. 그럼 밥을 먹고 음...그리고 인자 TV좀 보다가 편지가 온 것 있으면은 편지를 인자 그때부터 TV보면서 쓰고. 아 그러죠잉 그다가 인자 TV 끝나면은 책도 좀 보다가. 저는 일기를 꼭 써요.

몇몇 사형확정자들은 저녁 시간에도 종교 행위를 지속하기도 한다.

(오후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운동 끝나고 나서.) 지금같이 운동 끝나고 나면 보통 한시 반 들어오면은 보통 샤워하고 2시부터 TV가 나와요. 드라마 3시까지 보고 3시부터 4시까지는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인자 4시부터 4시 반까지는 커피물이나 식수, 탈수, 빨래할거 그 시간이 정해져있다고보니까 4시 반까지 고거 끝내고. 4시 40분까지 개인점검을 하니까.

(오후에는 TV보시면서 시간 보내시고.) TV는 한 시간 정도 보고요. 성경 두시간 보고. (성경을 많이 보시네요.) 그냥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러라도. 왜냐면 성경말씀은 이웃을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라 하는데 사람이 여기서. 저희 접견실 가셔보면 아마 요즘 붙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식표가 붙어있어요. 저희 배식 나오는거 그게 말로는 붙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접견하는 사람 들어보니까. 그럴때는 떡볶이가 나온다면 안나오는게 고구마가 나온다면 하나 더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그것도 사실 제 욕심인데. 그럴 때 조금 아 내가 아직 멀었구나. 성경 본다 해놓고서 그런거 욕심내고 미워하고 그런게.

사형확정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일상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하루는 그렇게 사실 거고, 그럼 뭐 일주일간에 특별한 행사나, 평소와는 다른, 어떤 주기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나요? 일주일동안? 하루가 계속 반복이 되시는 건가요?)
예. 그런식으로 반복이...

제2절 | 수용환경

사형확정자들의 거실 환경은 교정기관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출역 없이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기관도 있었고, 징역형을 받은 수용자와 혼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기관도 있었다.

독거 수용과 혼거 수용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별로 매우 상이하였다. 혼거를 선호하여 만족하는 이도 있는가 하면, 독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혼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인 이도 있었으며, 독거 수용이 마음 편하다는 이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저가, 한 열 몇 명 중에서 혼거방에 있는 사람은 저 혼자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독거에 가 있어요. 그러면 최고수를 독거수용로 해라는 그런, 행정, 교정 처우에도 없어요. 근데 왜 독거를 시키느냐? 사실 혼거생활은 사람들하고 잘 융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고. 인자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습니까. 인자 저는, 내 마음을 내가, 그런 바뀌서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잖,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만 이렇게 혼거생활을 해요. 인자 사람들

하고 서로 또.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 냄새를 맡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독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 일 년 몇 개월은 독거생활을 할 수 가 있어요. 근다, 그 조그마한 방에 혼자, 일 년, 이 년, 삼 년 이렇게 있으면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이 옵니다. 틀림없이 와요. 그든 안타깝잖아요. 그든 그 사람들도, 내가 이야기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하고 살고 싶은데, 관에서도 사실 그 사람들이 나같이 열심히 산다고 하면 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자기 생각이 그런 것이 안 갖춰져 있는 모양이에요. 근께 독거생활이, 그 많은 생활을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혼거할 때와 독거할 때 어떠세요?) 마음은 독거가 편해요. 내가 늦게까지 책 볼 수도 있고 뭐 늦게 그 뭐야 화장실 가면 씻거나 화장실 가도 누가 말할 사람 없고. 자는데 화장실 가고 늦게 씻고 그러면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저녁에 늦게 나 혼자 불켜 놓고 책 볼 순 없잖아요. 그러면 혼거 하면 책 볼라든 눈 무지하게 아파요. 불어둡게 해부리기 때때. 근데 독거는, 여기 이사 와가지고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불 안 끄고 싶으면 불 안 꺼도 되는거. 그 시설이 하나 설치 되가지고 좋드만요. 옛날 그 구교도소 비해서는, 밖에서 인자 스위치를 해 놓으면 안 꺼져요. 스위치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끄면은, 인자 직원이 끄면 어둡게 한 30? 40? 정도 내려가요. 근데 스위치 안 꺼놓으면 그냥 그대로 이 불빛 그대로 있어요. 이거 하나는 시설 잘 해놨드만요.

(그러니까 독거가 마음이 편하다? 다른 수용자들 눈치 안 보고 늦게까지 뭘 할 수 있고. 단점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단점요? 거의 다 좋은 거던데요. 옛날 교도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그때, 구교도소는 창문이 요 쪼끄만한거 요거 요거, 하나 좀 되나? 작으나? 이거 하난데요. 지금 창문은 요거 한 반? 요정도 되네 요정도

(건 혼거경험도 있으시고 ○○구치소 있을 때는 독거경험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형태의 수용 경험들이 있으실 거 같은데 그 중에서 선생님은 어떤 형태의 수용형태가 가장 (좋은가?) 어유 그건 당연히 1인 독거죠. 왜그러냐면요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여기는요. 여기 주임님 계시지만 세상에서 못된 놈이란 못된 놈들 다 여기다 잡아놓고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그냥 이렇게 와서 보고 만나고 가시지만은 여기계신 분들은 세상에서 못된 놈들 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못된 놈들 다 잡아다 놓고 느네 관리해. 월급 줄테니까 관리. 이거잖아요. 엄청나게 고생이죠. 정말 고생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뭐 죄송하지만 ○○○이(주: 본인을 지칭) 같은 놈들만 있으면은 편하실거예요 정말로. 이건 내가

자찬이 아니라 편하실거예요. 근데 벽이 문이라고 내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니까 그거 일일이 다독겨려주고 마음 추슬려주고 관리해가지고 사람만들어주고 생각바꿔주고. 고생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1인 독거죠. 독거죠. 혼거가 아니라. 그리고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여기 지금 우리 3명 4명 아 4명 5명 7명인가요? 우리? 9명까지 살고있거든요 지금? 작은 방에 5명이 살아야 되요. 요만한 방에요. 요만하잖아요. 작은거. 다섯명이서 요만한 방에 아홉명이 살아요. 그 속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다 일일이고 속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이렇게 많이 떠들어도 되는거예요? 시간이...? 저는.. 저는 뭐 괜찮은데 하이튼 뭐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지맘대로 살다가 요만한 방에 와가지고 다섯명이 살아야되고, 아홉명이 살아야 될 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저는. 맨날 그렇게. 야. 너 들어와가고 임마 얼마됐냐. 형 저 1년 반 됐어요. 그래?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운게 뭐냐. 네? 저 이런거 배우고 저런거 배우고. 야 그거보다 제일 먼저 배운거 있지 않냐? 뭐 배웠냐? 인내를 배웠잖아. 왜? 요만한 방에서 다섯명이 살으라는 거잖아. 철창길 밖으로 죽지.

(선생님께서는 혼거보다는 독거 생활이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거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주장하는게 방에 몇 명이나? 제방엔 다섯명있는데요? 너는 다섯명의 사회속에 살고 있는거야. 우리 공장 몇 명있냐? 우리 공장 19명이에요. 너 19명이 사는 세계에 살고 있는거야. ○○교도소에 몇 명있냐? 2000명이에요. 2000명 속에 한 번 살아봐라. 그 더불어 살아가는데 다섯명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19명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2000명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돌아가면은 ○○나가면 뭐 백만 속에서 뭐 어떻게 살건데. 독거보다는 혼거가 더 나아. 왜? 융합해서 사는 법을 배우니까. 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독거가 편한거는 확실히 편해요. 왜 편하느냐. 타치를 안받고 간섭을 안받으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은 혼자사는거보다 더불어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은 혼자서 살면 되지. 독거를 뭐 빨간명찰이라고 독거를 시키는거 뭐 강제로 시키는데 어찌겠어요.

(그럼 그 전에, 혼거 생활하면서 미결동에 있을 때보다 작업 나가면서 독거 생활 하게 해주니까 정말 좋으셨네요?) 좋죠.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니까 좋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혈변도 나오고 이게 안 좋아요. 이, 작업 끝나고 그 뭐야 755일 있다 보니까 한 서너 달 있는데 혈변을 보는데 사람 환장하드만. 왜 저기, 사람이라는 게 혼자 못 살잖아요.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되는데, 혼거하다보면 자기 기준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꺼는 씨부랄 안 쓰면서 남의 꺼는 인자 먹어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꺼 써볼면 난리나 버리고. 또 먹을 때는 언제 내가 그랬냐면서 아주 나보다 더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신경쓰다보면 이게 미쳐버려요 이게. 잠 못 자고. 그냥 혈변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신경쓰다보니까. ... 없어요. 편해요 오히려, 오히려 혼자 있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그 꼴 안 봐부는 게 젤 편해요. 남이 예를들어 만 원을 쓰면 자기도 만 원을 쓰던가 오 천원을 쓰던가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돈이 나같이 없어볼면은 상관이 없어요. 나 보다 더 많아요. 안쓰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아요. 근데 10원도 안 써부려요. 그러면은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다 싫어해요. 예. 뭐 인저, 저도 침에는, 아니 왜 독거 가서 왜, 그니까 대부분 그때 당시 사고 났던게 독거 가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처음엔 못했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저는 독거가, 서, 성격상 독거가 안 맞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형들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독거로, 일반 수용자들이 독거 간다는게 어떻게, 어찌 보면 특혜 겸 편한 걸 수도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내가 무슨 혼자 화장실에 가든, 새벽까지 책을 보든 밥을 먹든 뭐 설거지를 나중에 하든 이런게 사실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여럿이 있으면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좋은게, 같이 있으면 그 잡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삼 개월에 한 번씩 전방을 가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회 얘기도 듣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사건 반이 다 다르니까, 아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그짓말들 많이 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도 되고, 야 이거 직업이 별의 별게 다 있구나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직업도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좋았는데 독거, 그때 당시 몇 명 없었는데 그 형들은 독거 좋다고 편하다고. 근데 이제 뭐 천주교 ○○ 형도 그랬고 몇 명 이제 남기 형도 그랬고, 독거 가서 자꾸 사고가 나니까. 근데 알고, 저도 이제, 도, 저희가 이제 서울만 현재 독거를 주거든요? 원래 다 독거 수용 원칙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방은 거꾸로 이제 독거 가지 말고 혼자방 가라고. 사정한다는데 여기만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독거로 다 의무적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침에는 답답했는데 좋은 것도 있구 그, 그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무래도 좀 마음이 기분이 좀 많이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밥을 같이 먹더라도 좀 즐겁고 뭐 텔레비를 보든 뭘 하든, 뭐 궁금한게 있으면 뭐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저 이제 좀, 저두 뭐 장기 못 둔 지도 십 년이 다 되어가니까, 십 년 났나 독거한지. 장기 한 번 마, 이게 같이 둘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이처럼 사형확정자들은 대체로 독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나, 출역없이 하루 종일 독거를 하는 경우보다는, 낮 일과시간에 출역을 하고 이후 시간에 독거를 하는 것을 특히 선호하였다.

그러나 혼자 있을 경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예를 들어 TV 등을 시청하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소리내어 웃는 등의 감정 표출이 가능하지만, 혼자 있으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감정표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혼거와 독거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택하시겠나요?) 아...그거 반반같아요. 좋은 점은 혼자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본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혼자있으면 생각할게 있으면 하면 되는게 혼거방은 여럿이 있다보니까 화장실 가려고 해도 거처서 가야하고 서로 또 조심해야하고 물 내리는 것도 그렇고. 근데 좋은 점은 혼거방에 있으면 여럿이 있다보니까 사회 얘기도 많이 듣고. 좋으면 우울증은 안생길 것 같아요. 여럿이 있다보니까. ... 그거는.. 혼거방 있으면 가능했어요. 같이 있으니까 같이 과자를 먹으면서 보면은 이게 좀 뭔가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그게 조금 없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유쾌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겠군요.) 혼거방에서는 뭐 한 열 번 웃을거 독거방에서는 한번 정도. 엇그제 한번 나혼자 산다에서인가? 우연치 않게 박나래씨 때문에 웃고. 평상시 같으면 많이 웃는데 혼자 있으니까 그게 또 안되더라고요. (저도 혼자 가끔 TV보다 웃긴 하는데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잘 안웃어져요.) 잠깐 있으면 괜찮은데 독거방.. 고시원이나 고시원 생각하면 맘이 편하거든요. 고시원 가보셨어요? 고시원보다 어떻게보면 낫죠. 고시원 있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있다보니까 그게.. 저는 인간극장 좋아하거든요. 인간극장을 보면은 가끔 힘들더라도 거기서 보면 어린 아이들이나 장애 입으신 분들이 인생 사는거 보면은 저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가끔 투정을 하는게 뭐가 힘들다고. 어쨌든 죄는 짓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20년이나 삶을 더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바라면 자신한테 화날 때도 있고. 근데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어요. 밤에는 반성 많이 했다가 다시 일어나면 또 참 그게 스스로도 화가나죠. 누굴 미워하고 있다는 자체도 괜히. 가족을 미워하는.

거실 환경은 겨울보다 여름이 지내기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독거가 뒤에 화장실에 창문이 요거만한거 두 개가 있어요. 1미터정도 되는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여기 자살방지하기 위해서 망이 되어있어요. 그 망이 되어있으면 모기는 안들어와서 좋은데 바람이 안들어와요. 햇빛이 안들어오고. 그래서 인권위에서 말이 많았었는데... 그러고 그게 다고요. 그러고 그 사이에 화장실 문 크게 하나 있고 앞에는 문 요만한거 하나 있어요. 근데 또 문을 또 열더라도 앞애가 벽이에요. 선풍기를 틀면 뜨거우면 저희는, 혼거방은 거기는 사람이 좀 많아서 더운거고. 그 대신 거기는 창문은 떼주거든요? 앞 창문을. 이만한걸 떼줘요. 어찌됐든 바람이 불어 환풍이 되는데 직원 분들이 검방왔다가 1분도 안돼서 도망가죠. 거는 거꾸로 일부로 더 하다 가시라고 하죠. 왜냐면 선풍기가 돌아가도 어떨 때는 바깥애가 더 시원해요. 그걸 맨날 건의를 하면 그렇지. 형제들도 1년에 한번씩 방을 올리는데 서로 중층, 하층 할라고. 저는 상층에서 4년째인데 조금 젊다고.. 저도 나름 고참인데 그걸로 따지면. 친한 직원분들이 와서 나이드신 최고수분들이 있고 아픈 분들이 있으니까.. 상층에는 누군가 있어야하니까. 그럼 가죠. 근데 뭐 작년 보다는 더 더우니까, 그 생각 하면서 위안을 삼아요. 작년에는 수건을 다 적서서 바닥에 깔고 자도 못갔거든요. 너무 습하고. 선풍기가 50분 들어가고 10분 꺼져요. 10분 꺼지면 바로 일어나요. 1시간을 50분 안에 빨리 자야겠다는 생각? 그 압박감이 있다보니까 잠을 잘 못자요. 여름에는 두 시간, 세 시간 밖에 못자니까.

이들이 혼거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교정기관이 그렇듯 과밀 수용 상황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3인이 수용되어야 하는데, 6명까지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포화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또 검찰이나 법원에서 죄를 많이 지은 구속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정 시설은. 우리나라가 교정시설은 한 오십 두개인가 세 개 된다는데. 인자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용훈 대법원장 그거 했을 때, 그게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수용자들이 좀 나쁘게 말하면 불편한 것도 있겠쎄. 인권위원회에서도, 언론에도 ○○수용시설이 콩나물 집 같다 언론은 나오지만은. 근데 검사 판사님은 구속 시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잉. (그러면 지금 현재는 6인실? 여섯 명까지 수용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몇 분이?) 5명 있습니다.

사형확정자의 생활 중 중요한 부분은 운동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독거를 하는 경우 하루 중 유일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며, 다른 사람을 멀찌감치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수용생활 중에 가장 불편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독거실 안에서도.. 일상 생활 안에서 제일 불편하신 것..) 불편한 거 찾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은 운동장이 여기는 너무 작아가지고요. ○○에는 큰 운동장 사용하다가 여기오니까. 처음에는 너무 숨막히더라고요.

(운동장에서는 할 수 있는게 어떤 운동 할 수 있어요?) 뭘 수는 있는데 무릎이 인자 다치고는.. 여기 운동장은 꼭 피자판처럼 생겼거든요. 그래 여기 개인 개인이 들어가는 데 너무 작으니까요.

(좁아서 마음 놓고 운동하시기 힘들군요?) 운동할 수는 있어요. 뛰는게 좀 불편하지. 그 다음에 수용생활에 인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게.. 그냥 방에만 멍하니 하고 있다는게.. 인자 좀 불편하지에

(운동장에서는 할 수 있는게 어떤 운동 할 수 있어요?) 뭘 수는 있는데 무릎이 인자 다치고는.. 여기 운동장은 꼭 피자판처럼 생겼거든요. 그래 여기 개인 개인이 들어가는 데 너무 작으니까요.

(좁아서 마음 놓고 운동하시기 힘들군요?) 운동할 수는 있어요. 뛰는게 좀 불편하지. 그 다음에 수용생활에 인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게.. 그냥 방에만 멍하니 하고 있다는게.. 인자 좀 불편하지에

사형확정자들이 출역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과를 보낼 수 있었다. 작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징역형으로 수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형확정자들은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규모는 어떻게 되시나요? 같이 일하시는 분 들의) 한 삼십명 됩니다.

(삼십명 정도? 그중에서 특별히 친하신 분이 계세요? 특별히 친한분들은 몇분이나 있으세요?) 지금 여기 온지 지금 두달 됐는데, 거의 다 친합니다 저는. 같이 뭐 재밌게 얘기도 하고 같이 가식도 나눠먹고 또 오후되가지고 기도시간도 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얘기 나누면 어떤 얘기 나누세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죠 뭐. 잘 지냈나 어제 어제 뭐 티비볼때 어떻게 했냐 무슨 채널을 보냐 그런얘기죠 뭐.

(서로 건강도 챙기고 그러시겠네요?) 예 동료들이 그런거지 좀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살아가는데 또 편리하고, 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럼 주로 무슨 얘기 하세요? 마음 드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그럴 때는?) 일단 끝나고 기도해요. 아침에 가서 기도 못 하고. 바쁘니까. 바쁘게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기독교 그 하는 행사 있잖아요. 행사 준비해야 되고. 혼자 안 되잖아요. 오는 사람도 있고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오늘 편지 누구 왔냐. 집에서 무슨 일이 있냐. 그거 때문에. 좀

(동료들의 가족들의 얘기들. 신변잡기들 다?) 예. 원래, 원래, 같이 원래 있는 사람 있어요. 한 십 년 동안 같이 있는 사람 있어요. 나머지는 있다가도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다른데서 왔다가 요런 이런 일에 이송 하거나 뭐 탄 곳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변동 많아요

제3절 | 인간관계

사형확정자들의 수용생활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다른 수용자들이 자신을 사형확정자(이른바 “최고수”)라는 이유로 선입견을 가지고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들과의 갈등 경험도 많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면 그 때 사형수랑 지금 사형수랑은 어떻게 달라요? 지금 다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다른 분들이 선생님 볼 때도 무섭게 생각,...?) 아, 당연하죠. 아!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가 빨간 번호표잖아요? 그러면 빨간 번호표가 사형수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처음 들어오니까. 아, 저분은 사형수입니다. 교도생활 이십몇년 했어요, 그러면은, 위축이 돼가지고, 약 한 두달 지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와, 내가 사형수하고 같이 있는다. 불안하다 그 말이여. 예, 그리고 인자 방을 있잖아요. 지금 인자 교도소가 규정 그 방침이 한방에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몇 개월 있으면 또 방을 옮겨주고 옮겨주거든요? 저도 방을 옮겨 가면은요, 어이고 사형수가 못 있겠다고 방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화가 났던 일은 뭐가 있었나요?) 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조금, 방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자꾸 좋은 분위기에서 나쁜 분위기로 만들어 갔을 때 굉장히 전 화가 나더라고요. 좋은, 좋게 좋게 갈 수 있는 거를.

일반 수형자는 똑같은 수형자지만, 일반 수형자는 그냥 웃으면 지난일이겠는데 근데 이 사형수가 화났다. 사형수가 무슨 문제이다. 뭐 누가 직원 안 해준다면 제가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나중에 마음에 쌓여서 없는 데에서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눈치나 분위기로 알고있지 직접적으로 대들거나 따진 동료분들도 계셨나요?) 있죠. 왜그냐면 모르니까. 아니 알아도 대들기도 해요. 뭐 제가 인자 거 뭐 제가...저도 인자 50인테 넘어가지고 있으니까 싸운다는 자체가 사실은 꺼려지는 것이죠. 싸워봐야 뭐 서로 득될 것도 없고. 그러면 제가 거의 다 물러서는 편이에요. 그래도 많이 땀비터라고 허허허

(주로 어떤 상황에서 땀비시던가요?) 아 인자... 대화를 하다가 아...다 그런 것은 아닌데 내가 자존심이 센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대화를 하죠. 그럼 대화를 하다가 아...형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디 저한테 지적질이라 그러죠. 그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알았다 하고 넘겨요. 그럼 그 한번 넘겨주니까 계속 또 넘어오더라고요. 자꾸 넘어오더라고요 근디 참아주는 것은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어. 근디 중요한 것은 음.... 그 참아주면 당연한 것처럼 넘어오고 당연한 것처럼 참아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어떨 때는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근디 어...제가 욕하고 그 친구들과하고 같이 붙으면 사실 뭐 서로가 힘들죠. 서로가 힘들고 어... 사람들도 그냥...저 큰 소리 내는 것을 원치 않지만은 그래도 큰소리를 낼 때는 저 어떤 입에서 욕설도 나올 수 있고 그것은 뭐 인자 장담을 못하는거 같습니다. 사람이 욕해가지고 나오는 격한 말은 욕도 될 수 있고 또 그.. 안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자꾸 뒤 돌아가지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럴 때 많이 저주는 편이죠. 많이 저줘야 돼요.

막 제가, 제 오해하지 마세요. 전 제가, 몰랐는데 그 ○○형이 감형 받았을 때 노란색이니까 이제 몰라봤잖아요. 근데 아, 내가 봐두 사람이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일반사람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 뒤로 그냥 운동이나, 접견 배우는 될 수 있으면 안 입고 나가려 했던게 아, 우리가 내가 봐도 이 정돈데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

왜냐면 이저 그 사람들은 내색을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어제 방 사람들하고 운동장에서 걷다 보면, 일반 사람들이 수군수군 약간 덜 거 아니에요. 그게 대부분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나가면 자리 피해 주고. 그런거 우리 방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어떻냐 사형수가 안 힘드냐 무섭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들릴 때, 그런 게 힘들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저거지만은, 아 이게 생각보다, 이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또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지금이야 그때는 텔레비가 많이 저거 하는데, 지금은 생방송으로도 보여주니까. 사건사고가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이 형도 지금, 그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운동하면은 모르는 수용자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라고 하는데 주임님 말로는. 그냥 그 사람들은 서로 우리들 얼굴을 모르는데, 신문에 많이 얼굴이,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대충 아니깐. 운동장에서, 뭐 ○○○은 죽어라! 카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걸 참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독거를 연구하고 막 그런데 저는 아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자 혼거방에만 인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본게는 음... 새로 입실하는 사람들. 저가 누군지를 몰라요. 몰라요 인자, 안알려주니까. 그리고 방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요.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마라. 왜그러냐면 얘기하면 또 무서워 할까봐서. 무서워하기도 하고, 시선이 달라지기도 하고. 나갈 때까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어울려서 사는거죠 뭐

(오히려 그런게 맘이 편하신거죠? 혼거하실 때 최고수라는게 드러나지 않고 어울리는 게 맘이 편하신거죠?) 딱 그런 것을 붙여버렸을 때는 참..이제 시선이.. 아...저 사람은 사형수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해요. 또 허더래도 벽을 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는데 저 사람은 내가 사형수라고 가까이 안하고 또 내가 어떤 위해를 가지도 않는게 자기한테 어떤 화내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할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와주지를 안더라고요. 이런 빨간 수번호는 조금... 대할 필요성이 있을거예요.

많은 사형확정자들이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이 혼거할 경우 기관 특성상 미결수와 같은 방을 써야 하는 상황이 필연적이다. 이 때 교정 기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형확정자들과 재판 결과에 따라 퇴소하거나 조만간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야 하는 미결수들은, 처지가 너무 달라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

을 겪기도 하였다.

(특별히 선생님을 괴롭히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건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들고고 나가고 하면서 사건 얘기 하는 게 좀 안 좋다더라 얘기죠. 독거있다 보면은 그런 저런 거 들을 새도 없고 누가 물을 사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사건 하나 들고 너 이거 못나가 살아야 돼 하든 기분 무지하게 나빠요. 안 보면은 안 터지는데 보면 또 터져요. 물어보고 하든 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가 보든 아 나갈 수 있다 하든 아 좋다고 하는데, 못 나간다고 하면 기분 무지하게 나쁘고 사이 안 좋아져요.

(좋네요. 혼거 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혼거 할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신경도 많이 쓰이고. ... 쉽게 말하면 뭐랄까 들고고 나가는 사람들 보는 것이 좀 괴롭죠. 쉽게 말하든 사람한테 정을 안 줄라고 하는 편이죠. 정을 주다 보면 좀 맘이 아프고 뭐시고 그 사람 들어오면 또 마음 더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죄수자한테 거의 맘을 안주는 편이죠. 맘을 주다보면 이게 맘이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여기 생활 한번 여쭙게요. 여기 생활하시면서 조금 오래 계시면서 다양한 형태 수형자들을 보시잖아요. 어떤 형태 수형자들과 관계가 좀 힘든가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무기수와의 관계라든지, 미결의 특징이라든지?) 오히려 장기수들은 생활이, 생활하기 편합니다. 왜냐하면 다 오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단기수들. 단기수들은 이제 곧 나가니까 어쩔 때는 사람 취급 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눈치보고 살아야해.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그런게 없었거든요. 최고수라하면, 장기수라하면 그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가 그 사람들 겁을 먹어요. 눈치봐요.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눈치봐요. 그 사람들 나가면 인자 나가면 우리가 잘 못 한거 다 올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신고할 수 있으니까. 안하는것도 조금 있으면 잘못 했다고 이만치 불리면 우리가 다 불이익을 받으니까.

(오히려 미결이나 단기수들이 조심스럽다? 그 이후에 평판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 인거죠? 근데 장기수 중에서도 무기수가 있고 일반적인 장기수가 있잖아요. 그들 사이에는 관계맺음에는 큰 어려움이 없나요?) 사람마다 틀려. 장기수들도 가까이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좀 편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고 뭐 싸움하고.. 지금은 뭐 눈치 많이 보는거지. 조금만 얘기해도 고개 숙이게 되고

제4절 | 수용시설 생활 중 원하는 것

많은 사형확정자들은 수용생활 중 여가를 ‘잡생각’없이 보낼 수 있는 취미활동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형확정자들은 유기수 또는 무기수와는 달리 직업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인문학 강좌, 예술 강좌 등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교화나 다른 사람들 감아주는 일 말고요, 선생님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저 이번에 붓글씨 배웠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진작서부터 그거를 배우고 싶었어요. 붓글씨를 좀 배우고 싶어서 좀 했는데, 허락이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 붓글씨를 허락을 해줘가지고 1년 동안 붓글씨를 배웠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사형수.. 가둬 놓고 죽을 때까지 죽일 때, 집행할 때까지 가둬만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사형수도 교육을 참관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격리하고 배제시키고 떨궈놓으면 안 바뀔 거거든요. 예. 저는 지난 번에도 한 번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나요 제가? 문제수 상담할 때 전 가끔 이렇게 배석을 했었어요. 그문 이렇게 수용자가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옆에 있다가 막 위로를 해주요, 그렇겠느냐,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도 힘든데. 저가 이제 보면 빨간명찰이잖아요. 나는 사형수인데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힘 내십시오. 싸우면 뭐 해졌어요, 직원하고 싸우면. 아니 선의적으로 풀어봐라 방법을.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러면 대변해줄게, 내가 변호사 해줄게,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하고 싶으신 거나 배우고 싶으신 건 없어요? 사실 아직 젊으시잖아요.)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이거 때문에. 사형수 라는 이 그... 명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왜 못하는 거예요?) 뭐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예를 이곳에 지금 28년 전에 우리 ○○에 있을 때에는 컴퓨터 많이 없었어요. 대학 들어가야. 대학생이 돼야. 근데 컴퓨터 배우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근데 아무도. 컴퓨터 만질 줄 몰라요. 지금까지도 이 무슨 시대에. 사실 제가 떨어지거든요. 그거 배우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막혀있는 취미 활동이 서예나 캘리그래피 말고 또 있나요?)

저...저희같은 경우는 또...인성교육이 사실은 필요해요.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저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는게 뭔가. 어떤 강사분들이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절실히 공감할 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 인생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한번도.

(최고수들한테는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한번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 또....인성교육...도 인성교육이지만 어떤 직업훈련. 혹시라도 인자 직업훈련이라고 하면 컴퓨터나 또 어떤 공예같은 어떤거. 취미생활로 이 안에서 할수 있는거.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게 딱 그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좀 됐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어떤걸 하고 싶으세요? 가능하다면 어떤게..) 저는 여기 오자마자 바둑교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둑교실에 참석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형확정자여서?) 이거는 기결이면 되니까 해당사항이 없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또 문의를 했습니다. 바둑교실에 참석하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 천주교 주임님한테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벌써 진행하고 있다. 좀 화가 날라 하더라고요. 아 이런건 조금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니까 뭐 바둑이라든지 약간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었음 좋겠다는 거죠?) 예.

(수용환경 안에서 약간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신청하는 족족 거부당해서 화가나는거죠? 이게 다른 사람은 되는 프로그램인데 나만 안돼서 불공평한 느낌인가요?) 그런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에서 인자 일하는데 어떤 기술직인데 어떤 그런거를 배우고 싶는데 너그는 안된다. 이거나 여기서 바둑교실 참석하고 싶는데 안된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가 더 갑갑합니다. 여긴 아예 말이 안통해요.

그럼 뭐 제 생각에는 뭐 제 욕심일 수 있는... 이왕 이렇게 뭐 아직까지 뭐 집행 안 할 거면 교도소든 구치소든 어떤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좀 움직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뭐 작업을 한다든지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는다든지. 뭐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독방에 또 가둬놓고.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결수보다 오랜 수용생활을 해야만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결수라는 이유로 직업교육과 인문교육 등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이들이 교정기관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였다. '사형확정자'라는 지위가 생기면서 일부 교정시설에 한해 출역이 가능해 진 것은 다행한 일이나, 말 그대로 출역만 가능하지 그 이외의 교정 교화 프로그램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제5절 | 출역

사형확정자의 출역은 이들이 교정 기관 내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생산적인 활동이다.

(처음에 공장 나갔을 때는 엄청 기쁘셨나요? 첫 날?) 좋았죠.

(어떤 측면이 좋으셨어요?) 그냥 일 나갈 수 있고, 집회 나갈 수 있고. 그게 좋았어요. (밖에 나가는 그런 건가요?) 그쵸. 밖에 나가고 일 나가고 공장 돌아댁기고. 방에서는 그냥 방에만, 이 방 안에서만 놀잖습니까. 공장은 이거 4-5배 되잖습니까 많게는 한 10배? 되잖습니까.

(최근 썼던 일기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이 있으신가요?) 아 특이한거요? 특이한 것은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프니까 아 빨리 좀 전업을 좀 갔으면 쓰겠다. 이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 또 소요기간이 많더라고 의외로. 저희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전업이나 저 거실 뭐라 그럴까. 그 공장에 인자 출역을 하게 되면은 한 일 이주 정도면 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단계가 좀 복잡해져가지고 한 4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예전이면 2주면 갔었는데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아따 괴롭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그렇게 또 시간이 내 흘러가서 지금은 그저께. 그저께 공장을 옮겼는데 몸도 좀 편하고 맘적으로 좀 하고. 또 그전에 있던 공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환영을 또 해주네? 하하하. 아주 그냥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작업 나가시는거 같은데?) 예. 작업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6시 다음서부터 7시까지 청소하고 뭐 씻고 하다가 밥먹고 8시에 출근을 해요. 공장으로

다가. 예.. 8시 한 10분쯤 되면 출근을 해요.

(작업하시는 내용은?) 작업하는 거는.. 쇼핑백.. 종이 쇼핑백을 접어요. 종이 쇼핑백 접어서 하나 접는데 뭐 한 30원. 38원. 뭐 50원 이래요. 그거 접어서 한달에 10만원 정도 벌어요. 10만원 좀 더 벌기도 하고.

(그러면 작업은?) 작업은 이제 5시에서 5시 한 10분쯤 되면 공장에서 다시 방으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제 씻고 또 그때 저녁먹고 또.. 티브이도 보고 신문도 보고 성경도 보고.. 편지도 보고.. 바빠요.. 아니

(그렇게 출역을 나가겠다고 생각한 건 왜? 출역이 어떤 점에서 어떤 거에서 더 좋은 건가요?) 출역을 나가게 되면은 우선.. 요 미결에 있으면은 재판 이야기를,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되고, 똑같은 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기결을 가고 출역을 나가게 되면은 거기 계시는 분들은, 다.

(2008년. 그럼 10년이네요. 딱 절반은 일 하시고, 절반은 안하셨는데요. 어떡세요, 작업 할 때랑 안할 때랑 차이가?) 일단 편하죠. 방에서 계속 있는거보다 활동량이 있으니까 활동하니까 운동도 되고 또 다른사람들하고 대화도 하니깐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작업 안하는거하고 차이가 나죠

(작업 안할 때 혼거하셨어요? 독거하셨어요?) 혼거였었습니다. 좀 답답하고 그때는 뭐 지루하고 그냥 뭐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나오고나서 큰데서 운동도 하고 하니깐. (작업하는게 훨씬 나으시고 힘들거나 피곤하지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은 안해요.

(출역하시게 된 동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대화? 돈을 벌기 위한?) 활동하기 위해서 죠"

출역은 방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가족간의 관계가 끊어져 가족이 영치금을 넣어주지 않는 경우, 작업을 통해 교정기관 안에서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일 하시는데요?) 쇼핑백. 쇼핑백을 만들었었는데, 예전에는 인자 집중 근로라고 한 200장씩은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 팔이 장애가 있어갖고 한 3년을 하다보니까 아 도저히 못따라 가겠더라고. 아이 피곤해서 아 차라리 옮겨주쇼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는 예전의 한 반절정도 하는데 좋습니다. 한 이틀 됐어요.

아. 그니까 집중근로라는 데는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데예요. 그니까 그만큼 수당이 생기죠잉. 근데 보니까 17만원이 기준선이더라고요. 조금 더 되면은 20만원까지도 되는데, 제가 젤로 많이 찍었을 때가 22만원 정도? 그정도 할라면은 한달에 한 4000장 까지 만들어야해요. 51원짜리를 약 4000여장 만들어야하는데. 20일 정도 일하잖아요 잉. 그죠? 그럼 꼬박 200장씩 만들어야하는데 똥쌌니다. 하하. 그니까 념의 돈 먹기가 참 힘들죠잉.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하

(따로 소일거리로 책 말고 따로 하시는 건 없으시나요?) 현재는 없어요. 지금 (출역) 신청은 해놨는데 아직은. T.O가 지금 안나가지고 못나가고 있어요.

제 4 장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특성

박 형 민

제4장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특성

제1절 | 정서적 특성과 일상적 두려움

사형확정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교정 기관 밖의 평범한 생활에서 점점 잊혀져 간다는 사실일 것이다. 사형확정자들의 교정 기관 밖 마지막 기억은 사건 당시와 이로인한 재판 당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화하면서 사형확정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이와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형확정자 자신은 사라져간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선생님을 괴롭히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것들을 괜찮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것보다, 선생님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시는 것들을 말씀해주시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조금 더. 아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최고수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너무 해맑고 너무 잘 살고 계시는 모습을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고민도 여쭙본 거고 걱정거리도 여쭙본 거고. 어쨌어요. 실제로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죠. 당연히 안 괜찮죠. 아이 근데, 이제 딱히 그걸 잊어버릴려고 하는거지 마음속에는 당연히 힘들죠. 현실과 너무 다른데."

(그니까 지금 선생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니까 지금 다른 최고수 분, 한 20년, 30년 사신 분들 계시고,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한 5년 정도, 지금 선생님 정도가 가장 힘들 때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선생님 어떤 게 제일 힘들까. 뭐가 제일 힘들고 뭐가 제일 지금 사시는 데 고통스러울까. 제가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느냐만은, 제 짐작으로는 이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고 굉장히 생생한데, 그 기억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5년간 변했던 그 생생함과 내 기억 속에 있는 생생함과 현실에 만나고 있는 분들이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니까 정말 뇌피셜입니다. 그니까 최고수 분들은 이미 그 시기를 훨씬 지났기 때문에 기억과 현실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억은 기억대로 생생하고 만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대로 그, 생생한데 변해있고. 이런 부분들이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짐작은 한 번 해봤는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 그것때문에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사형확정자들의 두려움은 이들에 대한 처우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기도 하였다.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되지 않는 상황,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지만 아직 사형제도가 남아 있는 상황 등 사형확정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불확실성은 너무나도 많다.

(그럼 두려운 게 집행에 대한 것도 있고, 과거의 일 미안함 때문도 있고 불확실한 것 때문에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불확실한 거가 가장 크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힘든 것 중에 불확실성이라고 하셨는데?) 끝이 없는 불확실성 이것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형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죠.

(알고계시다시피 사형제도는 남아있지만 사실상 앞으로 사형은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집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제 일상 아까 적었잖습니까. 아침에 딱 눈 뜨면 아 이게 사는게 아닌데.. 하루가 또 반복되는 그 시간이 인자 짧은 시간이 인자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루를 반복해야 하는가. 이 좀 무의미한 시간만 계속 반복되는데.. 빨리 결정해줬으면. 아니면 내 스스로도 결정 해야 하는가 이 생각이. 어떨 때는 또...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재밌습니다. 또 뭐 다 잊지요. 그런 생각 한것도 언제 했냐는 듯 다 잊어요. 문득 또 야 이거는 또 아니지 이러면서. (12년동안 그 전에 생활하기 힘들셨잖아요. 지금과 비교하면 지금이 더 힘든가요, 그때가 더 힘들었나요?) 지금이 더 힘들어요.

(끝이 안보인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렇지요. ... 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앞전에 (유기징역) 살 때는 지금보다 더 여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철도 모르고.. 뭐 지금도 아직 철도 없습니다만 생각도 짧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살겠다면은 지금은 하루

하루가 생각만 고민만 늘어나게 되는거고요. 또 인자 또 몸도 불편하지 지금보다. 내일은 인자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주위에 아픈 사람들 얼마전에 또... 동료가 또 한사람 아파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 하면은 아...빨리 그냥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애써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음들을 되살려 드리는 게 굉장히 실례가 될 수도 있어서 여쭙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고민의 내용이 이제 출역. 그 답에 가족. 그런 거라고 하셨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 집행이나 안에서의 생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의 정도가 약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요.. 지금 제가 요 상황만으로도 아직.. 어.. 아직 해결하지 못 한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있는데, 벌써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인 거보다는 현재에 직면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게 더 우선적이다?) 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어차피 계속 지내야 될 거고, 어차피 거기 미래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준비한다 한들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큰 고민은 하지 않고, 지금 말한 것처럼 5년차가 가장 힘들다고 하시는데, 뭐 저는 늘 뭐, 이런 상황에 있으면 저게 힘들고, 저기에 있으면 힘들고 그런데. 어,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지, 판에는.

매일 반복되는 수용생활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답함,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사형확정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 뭐 재미있는 소설책도 보고 티비도 보고 어떤 날은 괜찮은 날도 있지 않나요?)
아니 맨날 맨날이 즐겁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답하긴 하겠지만 살아가는 게 나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데 더 깊이있는 게 저를 괴롭히잖아요.

(더깊이있다는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뭐지? 이 삶이 내 시간이 아닌데 하면서...
...

(그니깐 원래 계획이란 게 다 지키지 못 하더라도 그래도 한 반이라도 혹은 뭐 삼분의 일이라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 혹은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일부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 같은 것도 못 찾으시겠던가요?) 그런 의미는

있지요. 의미는 있는데...

(네. 너무 단호하게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갑갑하니까요.

(그니깐 뭐 선생님 갑갑해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들 대략적으로 짐작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다시 한 번 선생님 말씀으로 한 번 또 듣고 싶어서요. 지금 갑갑한 이유를 좀 설명하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뭐가 그렇게 제일 갑갑하신 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신다면?) 생활 자체가 좀 숨 막힐 때가 많지.

(생활 자체가 숨 막힌다. 음 어떻게 지금 갑갑하신 게 지금 특히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주욱 변함없이 계속일관적인가요?) 그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그런 게 조금 덜 한데 혼자 있을 때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고민 하세요?) 주로 고민이 그거 같아. 내가 어떤 뭐 책이라든지 뭔가 하지 않으면은 오늘... 오늘은 이렇게 끝나지만 내일은 또... 또 어떤 생각.. 또 똑같은 반복 생각으로 살텐데...하면서

간혹 직원과의 소통문제가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아래의 진술을 한 사형확정자는 중국인으로서 면접 당시에는 한국어를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었으나, 사건 직후에는 한국어를 하지 못해 직원과의 일상적인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기독교 믿기 전 삼 년까지 직원들이랑 갈등 많으셨다고 했잖아요. 왜 어떤 측면에서 갈등을 겪으신 거예요?) 말 못하니까. 말 모르는데.

(아 말이 안 통해서?) 말 못하니까. 말 못 몰랐고, 그 때는 지금 직원도 있겠지만. 직원 욕하는 거 진짜 아니예요. 그 때 보다는 지금 직원이 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십 년 전 쯤이라 직원이 그 때 진짜... 어찌 보면 좀... 다 아니지만 한 두 명이 좀 조금 성질들이 좀 틀리자나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근데 강한 사람은 강하고 강한 사람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부드럽지 못 해. 사람이 또 왜 나름대로 인내심 못하고, 또 내 살아가는데 외국인인니까 약간 무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때 아예 그 생각이 요 또또 없어요. 닥치는 대로 사니까. 그래요.

모든 사형확정자에게는 아니지만, 사건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이 꽤 많았다. 이들은 피해자나 사건에 대해 생각하면 죄책감을 경험하여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첫번째 2년 사이에, 첫 2년때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힘들었나요?)

그냥 뭐 죄책감 때문에 그러죠.

이들의 죄책감은 가해자의 트라우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피해자나 사건 당시를 떠올릴 때 정신적,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 때 기억들이 선생님을 좀 괴롭히는 것들이 있나요? 몸이 안좋다든지, 정신적으로 힘들다든지 가끔씩..) 가끔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나요?) 우울.. 우울증식으로. 이렇게 좀.... 자꾸 미안한감 때문에

(몸의 변화는 없으세요?) 좀 저 오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한?) 예.. 좀 으스스 하고 그럴 때

(주로 마음이 많이 아프신 거네요?) 밤에 기도하면서 좀 눈물도 흘리고...

(꿈도 꾸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며칠전에

(그때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선생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있는 지 좀 궁금해서요. ... 떠올리면 심장이 조이고 아프고 그렇게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런 점에서 어떤 몸의 변화나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그 제가 늘 생각했던 게 그거니깐. 그 뭐 일단은 이제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얼굴이?) 그 마지막 얼굴. 그게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제 손에 들어있는 칼, 아니면 뭐 흉기 이런 게 떠오르고요.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숨이 탁 막힙니다.

그 생각이. 오늘도 이 생각이 또 반복인가 이런 생각이 팍 들면 그냥 숨이 막혀요.

(숨 막히고 몸의 변화라든가. 식욕이 없거나 뭐...) 아, 식욕이 없지.

(근데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가 짝 경직되는 느낌이.

(얼굴이?) 네.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짝 경직되는데 그냥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마비도 아니고 좀 좀 싸늘하면서도 여기가 짝 경직되는 거. 소름 돋는 느낌 이렇게.

(얼굴 전체가 그렇게?) 아뇨. 전체가 아니고 요쪽 부분이.

(측면이?) 네. 요쪽이 짝 이런 느낌이 짝 옵니다.

(그런 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돼요?) 그 방금. 금방 또 돌아오는데. 그니깐 생각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확정자들은 교정시설 밖에서 점차 잊혀져 가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밖에 있는 가족과 친지의 걱정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럼 선생님한테 제일 큰 고민은 뭔가요?) 제일 큰 고민.

(예. 지금 현재 사시면서.) 제일 큰 고민.. 이제.. 출역에 대해서 계속 애길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가족.. 이제 뭐 다 잘 지내는데, 이제 여동생도
있고 한데, 여동생이 좀 잘 돼갔고, 밖에서 좀 잘 지냈으면 하는. 가족이 잘 됐으면.
출역도 하고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가족분들이 다 잘 지냈으면 하는.

(또는 어떤, 생각해 보면 고민이 많다가도 일하다보면 고민이 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고민하는 게 거의 뭐... 우리하고 뭐 일반수 같은 경우도 또 고민까
지 안 되어요. 뭐 자기 죄책.. 죄책감? 죄책감하고 가족이나 뭐 친구이나 집에서 뭐
엄마 생각할 때도... 동생 집에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상, 상 누군가 말아야 하는 상태에
서 못 나가니까. 그런 생각해서 너무 마음이... 주로 몇 가지 안 되어요.

(주로 가족 관련한 고민들 많이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가족. 다 똑같아요“
(최고수 분들도 가족 고민을 다 하신다는 거죠? 선생님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고민인가
요?) 그 제가 떠났을 때... 집에 나왔을 때 열일곱 살 나왔거든요. 영국 갔다가 러시아
갔다... 그 러시아 중국 땅 밟고 13일 만에 한국 왔어요. 그 때 제 동, 조카가 여섯
살인가 알곱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물아홉이 됐대니까, 스물아홉이 됐고 이제...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러니까 아 뭔가 걱정하는 거 보다는 보고 싶어요. 그니까 같이
제가 자라는 시간이 제가 같이 옆에서 자주 없었... 자주 있는 시간 없지만 가끔씩
일 년에 한 몇 번 만날 수 있잖아요. 밖에 있으면. 많이 못 만나요.

제2절 | 종교의 역할

사형확정자들에게 종교는 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종교적 위로는 그들이 사형의 두려움을 견뎌내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이 교정 기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희망없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해 주는 것이다.

이들의 종교활동은 이른바 ‘자매’라고 불리우는 교화위원들과 함께하게 되는데, 교화위원들과의 만남은 사형확정자들이 만나는 외부사람의 대부분이며, 따라서 가장 많은 외부접촉은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럼 종교활동은 주로 언제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해요. 천주교.
(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뭐 하는 시간은 따로 없으신가요?) 있죠. 기도는 저녁에. 그리고 인자 새벽에. 근게 그것이 여기서는 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담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그런 것은 없지만은, 어찌 보면은 참, 그, 사회로 말하든 뭐 수도 문제나, 또 뭐 불교 같은, 그런 절 같은 데에. 신부님도 결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성직자 생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것은 본인이 발견해 내면 된단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회에도 선생님은 가정이 있으니까, 자식들 교육시켜야지. 잉? 또, 집사람 있으면 집사람 사랑해줘야지. 또, 사회 생활 해야지. 또, 직장일 해야지. 여러가지 그런 고민과 그런 번뇌가 있지만은, 저는 있을 것이 없잖아요.

(수용생활 하는데 신앙 갖고 계신게 도움이 좀 되시나요?) 많이 되죠. 내 마음을 컨트롤 할 수가 있잖아요. 안그러면 사람이 그래요 선생님. 사회에서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든 되잖아요. 여기는 봐야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낳은 자식도 이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교도소는 이 좁은 방에 사람이 혼자 사는 방에 다섯 명, 여섯 명 있다고 그래 보세요. 협소하지,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담이 선생님에게 좋은 점이 어떤 점이에요?) 아니 저기, 뭐 이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 하고, 인자, 뭐시기 하고, 얘기 하고, 음식 싸 갖고 온거 나눠서 먹고, 그 인자, 없는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거시기거든요. 인자, 집회는 인자, 강당에 가서 인자,

여럿이 인자, 신부님 설교하고 인자, 끝나고 가는 거지만, 인자 뭐시기는 상담은 앉아서, 한 세 네분이 오세요. 그래 갖구, 얘기하고 어찌고 하다가 그라든 인자 그러면 한 시간 훌쩍 지나가고, 그러면서 또... 그런데 안해줘요. 천주교 세례 안 받으면"

(불교신앙 가진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불교는 한 십팔..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와서 믿으신거네요?) 예. 그것도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는데.. 스님이 한 분이 싸움을 해갖고 들어오셨더라고요?하하하하. 근데 아 이제 저 방에 오셨어. 근데 아침마다 기도를 하시더라고. 인자 인연이 될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만 했어도 제가 조금 좋은 자리 있고 그냥 좀 좋은 자리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 옆에 스님을 모시고 가만히 이케 들어보니까 염불도 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졌죠. 아무래도 성직자고 그러니까.. 편히 모실라고. 근데 저를 좀 좋게 봤는갑서요. 나가기 한 일주일 전에 내가 꼭 오마 그러더라고. 한 일주일이 지나고 출소 하셨거든. 면회를 오셨더라고. 면회를 오셔가지고 범명도 지어주고. 그래가꼬 이제 제가 진성이라는 범명을 받았어요. 참진 이를 성인데 참되게 살으라는 얘기죠. 아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안쓰러운지 어쩐지 울고 계시더라고요. 스님어머니. 제 어머니가 아니라. 또 어머님이 아들들을 데코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어 불교에 인자. 아니 그렇게 까지 하는디. 어떻게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종교도 하나 갖고 싶었고. 한 십팔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확정된 지 얼마나 지났을 때인가요?) 2년 정도.

(그럼 2년 정도는 종교 없이 지내셨나요?) 그렇죠. 그땐 진짜 죽는 줄 알았죠"

저는 기독교를 믿고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 여기 들어와가지고 누가 기독교를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 믿으면 내손에 장일 지진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나하고 하나님 ... 나하고는 상극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는데 어떤 무기수 형제가 나한테 하나님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무기수형제가 하나님을 전했는데 아... 나는 하나님을 안믿겠노라고 절대 그냥 반대를 했죠. 근데 이제.. 어느 이제 거기서 ○○교도소에서 상고 ○○교도소인데 ○○가 1심지인데 ○○ 구치.. 아아니 ○○교도소에서 옮겨갔죠. 거길로 옮겨갔는데, 직원 한분이 직원 한분이 오셔가지고 무릎을 차악 꿇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만을 위해서 그러신건 아니고 거기 오신 모든 사람들한테. 12명인가 13명인가 있었는데. 잘 풀어내시라고. 힘내라고. 어. 자알해서. 잘 사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으

라고 마아악 기도를 해주시는데. ... 저한테 성경을 하나 이렇게.. 해주시더라.. 아.. 나는 성경 안봅니다. 안보겠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보겠다 내가. 자신을 했어. 근데. 교학과에서 자매를 하나 뺏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예요. 권사님인데 돈이 있으신분이 아니고 남의 슈퍼마켓 처마밑에다가 이렇게 얻어가지고 과일장사를 하시고 새벽에 두시반에서 세시반에서 일어나가지고 우유배달을 하고 두 우유배달을 하시는 분이예요. 그런 분이 나를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씨.. 이 아줌마는 대체 뭐하는 아줌만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지고 저는 한번도 그런걸 본.. 저게.. 이 아줌마가 도대체 뭐하는 아줌만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렇게 했 대.. 근데 오실제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나한테 배풀어줬던거 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풀었던거보다 한 열배 백배..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주셨던 성경을 이제 조금씩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구치..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사형선고를 받고 ○○구치소를 갔지. 가서 ○○구치소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됐어. 기독교로 다가.

(재판중에 자매를 뺏어지신거고. 그때 기독교 신앙을?) 그때 뭐 기독교 신앙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재판중에 저건데.. 근데 그렇게 위로를 많이 주시더라고. 제.. 제게 위로를 차암 많이 주신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게 의인을 찾으러 온게 아니라 죄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도 안맞는 얘기를.. 아 그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는거야. 아 그건 안맞는 말인거 같다.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러오면 찾으러왔지 어떻게 죄인을 찾아서 왔대니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내가 봤을 때 그건 잘못된 말인 것 같다. 그게 성경에 어디있느냐. 어디 있다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나도. 이렇게 큰 죄를 지고 이렇게 수감을 차고 있는데. 나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 그렇다는거예요. 쓰읍. 야 이건 말도 안되는 말인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애길까. 어떻게 이게 성경에 있다는 애길까. 이런 마음. 성경이 언제 써졌느냐. 설명을 해줬어. 이제 성경을 그때서부터 조금씩 보기 시작하고 방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성경을 보게됐고. 그렇게 됐지.

(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밖에서 이제 신앙했던 기독교랑 또 안에서 이렇게 또 믿고 있는 그런 기독교랑 어떻게 느낌이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이 바뀐 게 좀 있나요?) 밖에 있을 때보다는 요 안에 있으니까. 밖에 있을 때 몰랐던 그 소중함을 요 안에 들어와서 그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애정이 깊어졌던 게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의지할 게 특별히 크게 없습니다. 그면은 이제

그런 쪽이라도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성경 필사나 안 해본 거를 하게 되니까 많이 의지를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직원들이 완전히 달리 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믿고 바뀐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뭐 내가 만약에 잡히..잡히지 않고 살지 않는 상태라 지금 밖에 있으면 누구처럼 뭐 도망가거나 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난 인정 안 해요. 난 잡히지 않으니까. 근데 공부하면서 잡... 고소하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전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 들어야 하는데 안들어서, 아담 하와부터 달라 해서 죄인. 완전히 달라 해서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 죄인이라...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라.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권세 주셨어요. 지구한테 권세 주시고 소장님들 권세 주시고, 그 사람들 순종하라.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라. 그거 때문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좀 충동하고 싶을 때에는 아... 여기서 하면서 조금 말로 풀어요. 한국말이 내 말 되니까 말로 풀고 또 여러 이 사람. 이 사람하고 상담 해 보니까 딴 사람 찾아가서 상담 하고. 말로 말로 푸니까. 그럼 되는 것 같아요.

...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게?) 도움이 되어요.

(처음부터 신앙을 가진 게 아닐텐데 신앙이 초심자부터 과정이 있을텐데?) 과정이 예. 한 3년? 이천 사년? 삼년? 부터 이 삼 년 동안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믿음적으로 아니까 실천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살으면은... 따라하지 못해요. 마음의 상태 아직 마음이 완전히 받아지 않으니까... 왜냐면 마음이 어찌 보면 공부? 무슨 공부 었어? 마음이 공부하는 게 좀...

(마음이 다스려져요? 편안해져요?) 그렇죠.

(어떤 심정으로 계신지 그니까 22년동안 심정이 일관적으로 쪽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변화가 있으셨나요?) 처음 재판을 끝날때는 빨리 죽고싶은 생각밖에 안났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뭐 빨리 편지까지 쓴 적이 있었어요. 빨리 집행해달라고. 더 괴로우니까. 죄책감 때문에. 씬 그러다가 인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게 좀 없어지고. 마음 편해지면서. 그 좀, 그때부터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거예요. 그때부터 좀 재밌게 살고있는

(남은 분이 교화위원들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만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같이

모이는거 아니죠?) 예. 저하고 직원이 같이 하시고, 목사님하고 거쪽 세분이나 두분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서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터놓을 수 있거나 관계를 좀 돈독하게 맺거나 그게 가능한가요?)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만 주고 가시라는 분도 있고. 말씀만 주고 가시는데 거기다 대고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오래 자매가 되면 많은 교도소나 다니시는 분은 요령이 있으셔서 애가 오늘은 조금 힘들구나.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잘 푸시더라고요. 두 시간 할거 오늘은 한시간만 하고 대화 해볼까? 그런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화 되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신앙 있으신 분들이라 깊게 못들어가는 데 얘기 하다보면 기도해라 하나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막히다 보니까. 기도해라 하면 아니 기도는 하는데 그래도 그냥... 누군가 대화가 필요한데. 그 대화마저 차단되니까 좀 그렇죠 그럴때는.

(그럼 천주교 신앙을 이렇게 가지신건 언제부터?) ○○구치소에 있을 때에 수녀님하고 만나게 돼가지고 세례받고 했는데... 근데 전 저는 항상 세례받는거 자체가 저는 자격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 나가는 것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집회 자체에서 뭐 원수를 사랑하라, 죄인도 예수 믿으면 다 죄사함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거는 근데 저는 절실하지 못하거든요. 믿음이. 제 마음에 인자 깊이 다가오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그럼 이 세상에 전부 죄인은 없잖아요.

(아 이런 말씀 나누시고. 교화위원들 한달에 한번 뵈다고 했는데 어떤 대화 하시나요?) 수녀님하고는 인자 성서생활 그거 인자 또 낭독하고요. 그 다음에 인자 수녀님이 인자 생활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뭐 잘 지내고 뭐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러면 그거는 인자 니가 인자 그때부터 인자 혼나는거지.

(뭐라고 혼내세요?) 겸손해야 하는데, 왜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냐. 그거 뭐 좀 더 즐겁게 생활하고 주위에 동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이거는 나의 너에게는 전부 저 뭐지.. 교육이 되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

많은 사형확정자들은 여유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 경전읽기, 필사 등 종교적인 행위로 빈 시간들을 채우고 있었다.

(아침 다섯시 십분쯤 일어나셔서. 출역하기 전까지 새벽기도를 해야 되고?) 예, 보통은. 새벽기도 하고, 예배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요. 예배... 너무 시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사형확정자들이 행하는 종교적 활동 중 ‘필사’라는 활동이 있다. 필사는 성경 또는 불경을 자신의 손으로 그대로 베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종교적 신심을 강화하기 위해 경전을 베끼는 것이지만, 아울러 무료한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면서 ‘잡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성경필사는 해보신적 있나요? 몇 번 정도 하셨나요?) 했죠, 성경 필사를 내가 두 번 했는데, 또 작년에도 있잖아요.

시기..불교거든요. 법화경을 쓰고 있는데 2시간 정도. 한자 공부겸 쓰고 있습니다. (불교를 잘 몰라서 그런데 한자가 많이 있나 봐요?) 아 예. 지금 법화경이 한 9만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권이. 아 요새 초서가 아주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서 공부좀 하고 있습니다.

(번역본을 보세요, 원문을 보세요?) 원문을 갖다가 이제 한자로 된 것을 초서로 옮겨 쓴거죠. 어떻게 보면... 저기 매력이 있더라고요. 두 시간 정도 쓰다보니까 한 9만자 정도 되는데.. 한 장에 한 두세자 정도는 하 너무 어려워서 번역이 안되고 그 나머지는 초서로 번역이 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하하.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그런 재주도 생기대?

제3절 |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

사형확정자들은 자기 자신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였다. 잊으려고 노력하거나 어렵게 건디고 있는 사건의 기억을 되살리게 함으로 교정기관 내에서의 생활이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그 신문이나 잡지에서 선생님이 다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정적으로 다루는 신문사도 있고 우호적으로 다루는 신문사도 있는데..?) 사실 뭐 타이틀을 맨날 쓰니까요, 뭐 헤드라인으로 맨날 쓰니까. 저 자신요. 그 뭐.. 어.. 많이 부끄럽죠.. 그 부분이 이제.

(보통은 했던 선생님이 했던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가는 언론이 많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 저.. 피해자도 그렇고.. 많이..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지은.. 행위이고 죄니까.. 어떻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저거는 없죠.

(그래도 어쩔수는 없지만 안에서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아플뿐이죠.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아프죠. 내안에 이렇게 악한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36에 들어왔어요. 여기를. 36에 들어왔는데 까말로 지금 36이 63이 됐는데.. 예.. 까말로 63이 됐는데, 36살 때 까지는 직장인으로서 월급쟁이로서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이런.. 자기.. 이런 모습이 되고 이런 신분이 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36살때까지는 잘 살았는데 한순간에 그냥.. 다니던 직장에서도 파면이 되고.. 예... 어떻게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사가 나면서 했던 일들이 떠오른다?) 예.. 옛날에.. 아.. 그때.. 노력은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가정을 회복하려고 자알 할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부족했던거죠.. 그때는.. 지금은 제가 이제 여기도 나오고 종교에 대해서도.. 예.. 그때는 제가 이제 종교도 없었고.. 예.. 선교도 없었고.. 집사람은 이제 거기에.. 예... 종교에 빠져있고. 그답에 이제 저는 그것을 막고 어떻게.. 넘어지는 것을 부서지는 것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런 중에 뭐 방법이란 방법은 다 쓰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어요. 한순간에.. 또..

(20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판결 선고 받고 그 때는 괴로웠을 거 같긴 한데 그 외에 힘든 시기가 있었을까요?) 가끔씩. 조금 티비 나오는 큰 사건 있잖아요. 옛날에 사형수 사형 판결... 나오는 사건 있고, 요새도...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그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 피해자 보다 보니까?

(괴로웠어요?) 괴로웠죠. 직원이... 아 직원 아니라 수용자. 다른 수용자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틀려요. 평상시하고. 그 신문이... 신문 몇 시에 보도 나오기 전에 하고 후에. 몇 시 동안. 자주 아니지만.

(선생님 사건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나와도요?) 네. 조금...

(그런 보도 나오면 여기 분위기 어때요?) 별로 신경 안씁니다. 그러려니 하는거죠 (보통 다른 분들 중에는 그런 사건 나거나 아니면 강력 사건 나거나 하면 불안해진다든지, 스트레스 쌓인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셔서 어떤지 좀 여쭙보려고) 그런 사람들 있겠죠. 근데 전 어제 보면서 당연히 뭐 그정도 죄같으면 받아야지 하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자막, 자막만 나오더라고요 이 보니까. 그래서 당연하다 했습니다

(가끔은 뭐 외부에서 사형 찬반논란 또는 뭐 여론 조사 이런거 나오는거에도 큰 뭐..)

예. 전 신경 안습니다. 그런거 신경쓰면 고달파지니까 잊고 뭐..하하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잠을 또 못주무실 수도 있고) 그런데 빠져가지고 뭐 또 불안해지니까.

(그런 경험은 실제로 불안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사건에 대한 보도 뿐 아니라, 사형제도에 대한 보도도 사형확정자들을 불안하거나 괴롭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사건이 나면 조금.. 그..) 아무래도 위축이 되는 것도 좀 있고. 예전에도 뭐 지금 유영철씨 사건 터질 때도 그때 뭐 사형제 폐지 된다고 하는데 유영철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그 때 법무부에서 보류가...지켜보자. 이 사건을. 근데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없었던 걸로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씨. ○○이형 사건이 빵 터지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실 언론..정치 때도 많이 이용하는거 보니까. ○○○ 사건 부산사건이 터져도 그렇게 아무래도. 왜그러냐면 사동에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이름이...가끔 저희 잡지에도 실리더라고요. 이름이...한국의 사건들? 이렇게 해서 이름하고.. 요즘에는 실명이 많이 실리니까. 그러고 또 그런 사건 나면 동아일보나.. 특히 동아일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전국 사형수는 사건이랑 이름하고 나오더라고요. 또 과장되게 나오니까...

(또 한가지 말씀하신게, 바깥에서 사건들이 터졌을 때 마음들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다 그럴거예요. 그거 또 여파가 크니까. 지금도 천주교에서 법..천주교에서 사형제 폐지 올렸다고 헌법소원 올렸다고. 그런 상황에 저거 터졌잖아요. 화성 사건. 그것도 그래서 쑥 들어가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 터지면은 저희 기사들이나 그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동 사람들도 이름 나오면 이름을 아니까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아 저사람이 저사람이야? 이러면서 아무래도 선입견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때 예민해지죠.

(나랑은 별 상관없이 없는 사건인데도, 바깥에서 큰 사건이 나면?) 나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무의식결에 뉴스 보다가도 아 저거는 사형시켜야해 하니까. 저희도 사건보면 알거든요. 아 저거는 최고형 나오겠다. 그런걸 보다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은 자기들 생각 하는 거잖아요. TV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아무래도...

(그런 사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게 여론의 비난을 받는 두려움 같은 건가요?)

아니면 집행을 할까 하는 두려움인가요?) 아 저는 차라리 집행은 신경 안써요. 차라리 솔직히 말하면 뭐 자살을 하면 지옥가야 하는데 집행을 하면.. 어떨 때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눈 뜨면 똑같으니까 일상생활이. 즐겁다가도 아 눈뜨면 또 오늘 똑같으니까...

아울러 언론보도의 괴로움은 언론이 자기 자신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괴롭힌다는 것에 있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경우, 주변인들의 비난으로 인해 가족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사형확정자들이 적지 않았다.

(어떤 사건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 만으로도 수치스럽거나 하시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처음에는 덤덤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한번쯤은. 근데 대부분은 언론이 한번 두 번 신문으로 때리니까. 그럴때는 조금 이리다가 우리 이름 또 나오는거 아니야? 이렇게..

(신문에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가족들이나 딸이 볼까봐. 딸이 여겼는걸 모르거든요. 대학생인데 딸이 여기 있는 걸 몰라요.

(아까 가족분들이 고향에서 피해를 당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피해를 당하셨나요?) 그게 자세한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주위에 어떤 시선이.. 시선이 아마 따가웠겠죠.

(선생님 사건을 고향에서는 다 아시나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일어났던 것들은 직접대고 얘기 안하겠지만은 그래도 아 저집은 저집은 또 그런 집안이고 좀 꺼려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따가운 시선이 있었지 않았을까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더라도 시선이나 분위기나 마음의 부담감 그런건가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형제들한테. 내가 물어보진 안했으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에 살다가 ○○로 이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왜그냐면 거기서 잘 살았거든요. ○○에서.

(○○가 대도시잖아요.) 아니야니. 그런게 아니예요. 물론 더 큰 도시긴 하지만은 살던 물이 좋은 거 아녘니까. 살던 물이 좋고.. 또 누구든지 연고지가. 물고기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잡은 놈 여기도 풀어주면 적응 못해요. 여그서 잡은 놈은 여그다 풀어줘야지, 여기도 풀어주면 방생이 아니라고. 그러듯이 여기 살다 보면 좋은데 여기서 이사 왔다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났나요? 사건 당시에 난 건가요?) 예예.

(지금도 혹시?) 아뇨, 지금은 안 나고, 사건 당시에는 났는데. 이제, 제 사건이 터지고 또 더 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좀 일찍 묻혀서 사람들이 마이.. 처음에는 이제 사건이 너무 크다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친구들도 찾아가고, 또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에 기자.. 가서 그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학생회장으로 뽑았느냐 그런. 인터뷰 해주는 애들 얼마 주겠다 그런 말도 마이 한다고 친구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이 제일 힘들었을 겁니다. 저희집이 이제 ○○○을 하는데, 그거를 일을 못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기사화 되면서, 선생님택이, 그 집이 선생님택이라는 걸 주변에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예. 그게 그랬나 봅니다.

(그럼 말씀을 다 하시던가요? 부모님이?) 아뇨, 부모님은 당연히 다. 커트를 했죠. 기자가 오면. 그래서 일을 못 하시고. 기자들이 계속 찾아오고, 집에 찾아오고 하니까.

사형확정자에 대한 부적절한 취재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출하였다. 면회를 가장하고 몰래 촬영을 한 방송사도 있었으며,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었다. 사형확정자들은 이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였다.

인제 저는 그 때 그거는. 그 말을 한 뜻은, 갑작스레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두 분이 면회를 오셔가지고 여자 분 한 분하고, 남자 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자 분이 연출가고 부연출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조연출인가 뭐. 오셔서 한다는 얘기가 아, 혹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해 황목사님 아세요? 황목사님이요? 예예, 빈 적은 있어요 알죠. 아 우리 그 분들하고 같이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 예예, 근데요? 아 뭐 ○○가서 이 서류를, ○○○씨 서류를 다 떼어 보니까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흠, 혹시 재심 할 의향이 없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재심 할 의향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큐멘터리 같은 걸 제작해 볼 생각은 없어요? 꿈에라도 생각은 못 했던거죠 그거는.

(미끼를 던진 거네요.) 예예. 나는 생각도 못 하고, 아뇨 저는 그런 거 해 볼 의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나는 다시는 나로 하여금, ○○○이라는 이름 때문에, ... 같이 살던 아내나 딸들에게 나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고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 나 지금 평안하다, 이 말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앞에 절을 짖 잘라먹고 맨 뒤에 평안하다 이것만 딱 내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니가

평안하냐, 니가. 어떻게 니가, 저, 저, 죄 짓고 들어와서 살면서 평안하냐, 말도 안되는 소리. 너 살려고 마누라, 새끼들 뽕뽕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게 방송으로 나왔다고? 뭘 소리를 하고 있는거야?

(그분이, 인터뷰를 딱 한 번 응했는데 그렇게 과장해서 나왔다는 거죠?) 아니, 인터뷰도 안했죠. 그냥...

(그 저, 며, 접견을 딱 한 번 했는데?) 아니아니, 헛 것도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형님은 인제 뭐 몽지가 면회왔습니다 하니깐 자기가 아는, 알았던 사람이 온 줄 알고 나갔는데.

(기자니까. 바로 나가신 거죠?) 예, 그분, 기자신분을 밝혀야 하나니까, 밝히니까 밝히자마자 이제 누, 모르는 분이 들어오니깐. 오, 뭐, 누구세요 했더니 기자라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 꼭 그거만으로도 벌써 그분은 기삿거리가 된 거예요. 그니깐 참 무섭더라고요.

(기자가 막 찾아 오고, 가족 괴롭히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셨잖아요.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일단 기자들이 못할 짓 한 것은 맞는데,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제대로, 내용은 제대로 보도하셨나요?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아닙니다. 왜곡하고 그런 게 한 70프로는 맞는데, 30프로는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폭력을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대나, 세 대를, 얼굴 부분에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멍이 났는데, 이제 뭐 피가 터지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왜곡해서 쓴. 그리고 또 이별, 이별을 요구해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게 아인테. 이미 다 끝났고 다 끝난 상황에서 그, 부모님과 양쪽 부모님이 만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을 친구를 통해서 들어서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이별은 이미 했는데 이별 요구로 인해서, 이제 그 부모님이 결혼을 안 시켜준다는 이유로 언론이 그렇게.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태도나 언론 내용에 대해 왜곡이 있다면 언론에 대해 대응하거나 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신문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서 그걸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관구실 계장님한테 면담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아 니가 지금 너무 큰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니가 만약에 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면은 과연 경찰들이나 여기 있는, 여론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를 파고 들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자들이 맘 먹으면 더 괴롭힐 수 있었으니까.) 네 맘 먹으면

더 내 보내고, 그것도 저는 좀 그래서 그러면은 저도 저지만은, 피해자 분들도 그 상황이 아닌 부분을 접해야 되는데. 그 좀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언론 기사나 그런 거는 아예 자체를 몰랐으니까. 직접 겪고나서 보니까 와, 이게 너무 와전되고 왜곡이 돼버리니까. 이, 70%는 맞는데 30%를 조금 왜곡,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언론은 아니지만, 단행본을 통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가족이 고통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형확정자도 있었다.

(선생님이 하신 행동으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받고 그런 게 마음이 좀 아프시다는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뭘때때 나한테 나때때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야 죄를 진건 내가 지었기 때때 다 하고 뭘 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대에 ○○○인가? 고놈의 새끼가 나에 대해 아무 방 보든 이 날 취재도 않고 자기 상상으로 책을 썼더만요. 그런 책을 써야 되는 건 난 이해가 안 가더만요. 난 오다가 그 책 좀 빼을까 할라다 말았는데. 그거 때때 식구들 얼마나 고통 받았겠습니까 예? 이름도 다 실명으로 나가고. 이름이 실명으로 안 나갔으면은 좀 괜찮아요. 나한테 취재라도 해가지고 그 무슨 얘기라도. 한 마디라도 받아 갖고 가져가서 글 썼으면은. 이해가 안가요. 아무 취재도 안했어요. 와갖고 수사 접견한다고 합디다. 내가 거절했어요. 그러더라는 몇 달 있다가 책에 나왔더만요. ○○○ 교수 살인 저기 해가지고. 책에 나왔더라고. 그게 가당해요? 내 몸에 문신이 있네 뭘했네 생각하면은 뭐 이래갖고 썼더만요. 내가 한번 보여줄까요. 그림 하나 있어요? 그림 하나 있어요? 없어요. 이 여기 화상흉터랑 없어요. 뭘 화상이 있네 문신이 있네 이런식으로 쓰고 아무 근거 없는 책을 써놨어요. 이렇게 추리 아니, 자기 상상을 해갖고 응? 책을 쓴다는 것이 그게 가당이나 해요?

(○○○ 씨를 만나 뵈 적이 전혀 없는데? 거절 하셨는데?) 없지요. 인자 고소하고 뭘시기 하고 한다니까 면회 한번 왔더라고 미안하다고. 그서 내가 그 사람이 ○○○이라고 얼굴 알아요. ○○대 교수 ○○○이라고. 교수라는 사람이 응? 내가 범행 했든가 내가 살아왔든가 뭐 하나하나도 지금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 했으면은 원한관계도 않고 원망도 안 해요. 예? 솔직히 심정으로 지금 나가면 내가 곧 죽어도 여기 다시 온다 해도 고놈을 내가 작살내고 싶은 생각이예요. 왜? 내가 허지도 않은 거, 내 몸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뭘시기를 공상과학으로 써 가지고 책을 낸다는 것을. 그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나 어머님이나 형제들은 뭐가 되냐 이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화나신 부분이 사실이 아닌 부분인가요?) 내가 하지도 않은 범죄 같은 이런 걸 다 써놔단 말인가.

제4절 | 사형에 대한 불안감

사형이 집행된지 20년이 지나 실질적 폐지가 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여전히 제도로서의 사형이 남아있다는 점 때문에 언제든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형확정자가 있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요?)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 또... (집행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있고, 뭐 항상 시간 약간 좀 정신적으로 불안 좀 있어요. (아까 두려움 말씀을 하셨는데 사형이 집행이 될까봐 그런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참. 이 참. 제가 언제부터 뭐 사는 게 어찌 보면 죽은 거 못해요. 어찌 보면 사형수로서는 사는 게... 마음이 어찌 보면... 음 고통스럽고, 뭐 피해자들은 더 고통스럽지만... 그러니까 조금... 별 받는 거죠. 그니까 사람이, 사람이 죽는 사람이 죽는 것 뿐 아니라, 이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남은 일을 하잖아요? 남은 사람을 두고 오면은 불안하고 뭐 이상 하는 게 죄를 때문에... 그죄를 통해서 얻은 결과래요. 죄를 지으면은 성경사에서 아담 하와에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 피했어요. 왜 피했어요? 무서워 피한 거 아니에요. 그니까 내가 처음에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잡힐까봐 불안하고. 잡히니까 뭐 불안하지? 집행문제도 있고, 형실에 나만 나쁜 짓한 일도 있고? 그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서 약간 좀... 약간 좀 근심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삶이 안정적으로 쪽 유지가 되고 정리가 딱 되신 것 같은데 그게 확정 받고 처음에도 그러셨어요? 확정 받자마자 사형 대법원에 판결 딱 받고.) 처음에 인자 대법 선고 날 때까지, 나도 나서도 아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 했어요. (선고 나기 전까지도 사형이 될거라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 나고 한 3년 까지도 제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안했어요. 언제든지 또 가자고 하면 가고. 언제든지 갈 생각은 있었는데 아 그것이 인제 징역이 되가지고 지금까지 2020년까지.... 처음에는 힘들었

죠. 왜 안힘들었겠어요 사람인데.

(확정되기 전에는 알았다고 하지만 확정될 때랑 또 그 전이랑 다를 수 있고요,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 선고를 받았을때요? 어.... 이제 거기에 대한 시를 하나 썼어요. 하하. 시를 하나 써놔었는데 참. 그렇지만은 제 죄가 크다고 생각지는 아니 저저 작다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제가 어떤 큰 죄지는 마음이 있는 ○○○씨나 이런 사람들 볼 때에 아....참 가슴이 아파요. 음... 그런 사람들은 참 그렇게 값을 당해야 사실은 맞는데 저 사람들도 당시에는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게 어떤건가요?) 살고 싶었을 것이고, 또 무서웠을 것이고. 그것이 인자 화성 사건이 드러나기 전이니까요 나는 이런 것을 조금 숨기면은 밖에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사람은. 근디 저는 달랐어요. ㅎㅎ. 저는 없는 것을 아니 저... 제가 밝히지 않으면 저.... 그냥 조금 미궁속으로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사건 두 개를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가 좋더라고. 근디 나는 그때부터 사실은 삶이라는 것은 인자 법무부에 딱 땀겨놔지. 아니 지금은 웃을 수가 있는데요 웃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고 참... 재판을 이제 1심, 2심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 항소이유서 쓰고 반성문 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소 못했는데, 아니 자동으로 항소가 되더라고요. 자동항소도 없고... 항소 이유서를 또 쓰라고 한게 항소 이유가 있어야지. 항소 이유가 있어야지요. 이유가 없잖아요. 뭘 갖고 내가 항소를 하겠어. 그래가지고 짧게 두줄인가 썼어요. 항소이유서 두줄 쓴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고.. 잘못했다. 그런 말 밖에 쓸 말이 없더라고요. 살 붙이는 것도 그렇고.

반면 사형 집행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두렵다는 사형확정자들도 있었다.

(한참 2009년인가 그때 청송 청소한다, 집행한다 그런 소문 짝 돈 적 있었잖아요.) 예. 있었어요.

(그때 분위기 안 좋았겠네요?) 젊은 애들은 안좋았죠. 젊은 애들은..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때 좀..) 아니 저는 뭐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가면 가는거고.

(불안함이 아예 없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경을 꺼버리는건가요?) 아니 그런 생각 할 때는 그냥 성경에도 빠지고 필사하고 거기까지

(탄 생각으로..) 공부하고 하나까.. 지금도 누가 사형에 대해 얘기하면 야 그런 얘기 하지마라. 나한테는. 직원분들도 가끔 그러거든요 저한테. 야, 좋은 일 있을 거다. 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지금 못사는데 그러고 끊어버리는데. 피곤해갖고... (지금도 언제 집행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그거는 크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저는 종신형제로 갈까봐 그게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아니 뭐 종신형제로 가면 적어도 나라가 날 죽이지 않을거라는 확신은 갖지 않나요?) 그것도 그런데 차라리 그냥 젊었을 때 불러주면 더 안낫겠어요? 기증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나이드신 얼마 전에 떠나신 ○○○ 형제님도 일흔몇살에 당뇨를 얻으셨는데 그 모습 보니까 형제가 종신형제로 가면 감행 없는 종신행이고 가족들이 뼈도 못찾아가는 종신행이다 이런 말들이 돌아 보니까

(무슨 내용이었나요?) 그 방법대원 살인인데 그 정말 우발적인 거... 아니 뭐 그 정말로 의도치 않게 해가지고 방법대원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살게 됐는데 그때 너무 억울한 겁니다. 12... 12년까지 받을 그... 무기를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 와서 15년 받아서... 그 뭐 아니 15년 받아서 ○○ 와서 12년 받았거든요. 그때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하소연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때가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 그때는 이제 또 교도소에서 이제 지내다보니까 이제 아니 그래도 내일은 있으니까 뭐 기간 지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버텼는데 근데 요즘에는 여기 이제 다 포기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이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이 길어지는 시간만큼 제 마음에 들어오는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것. (그니까 그때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지만 기간이 있어서.) 네. 어떤 희망이 있었는데.

한편 사형의 집행여부나, 앞으로의 수형생활의 고통 등에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현재의 삶에만 충실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형확정자도 있었다.

(근데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잖아요. 사실은 매일매일..) 아니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죽은 삶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여기도 그렇게 썼어요. 여기도 그렇게 썼.. 사실은 죽었.. 죽은 삶인데 죽은 삶인데 죽은 삶을 살고 있는데 숨만 쉬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은 아니죠. 지금. 진짜 죽었죠. 그때 죽었죠 전. (초창기에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집행도 되고, 지금이야 집행된지가 꽤 오래되가지고 사실상 지금은 집행될거라 생각을 안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사형제도는 아직도 살아있는 법이잖아요. 저번에 누구죠 그.. 한나라당

누구죠 홍준표. 그 양반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바로 내 집행해야겠다. 사형집행해야겠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법이니까 뭐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월하고 살아요. 다만, 세상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들어와가지고 비록 내가 갇힌자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있지만은 다시 이안에서는 죄를 짓고싶지 않다. 작은 죄라도. 이 안에서 죄를 짓고 싶은 삶은 아니에요. 또 뭐 저는 항상 사형으로다가 문제수예요. 최고의 문제수예요. 왜 문제수.. 세상.. 이 안에 들어와서 저는 뭐 소규칙 소규를 어기고 징계 뭐라 그러지 징벌을 받게 된게 아직까지 27년 동안 한번도 뭐 조사수용되고 징벌가고 이런건 한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이 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냐면 나로 인해서.. 국가가 나라가 혼란을 겪고 그랬는데 다시 이안에 들어와서 나로 인해서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살거예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집행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은 아예 없으세요?)

예. 아예 없습니다. 그런 거는.

사형확정자들의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였을 때, 상당수의 사형확정자들이 사형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그 이유는 사형이라는 처벌의 억제력, 잘못에 대한 책임 등을 들었다.

그 마음에 무게를, 내가 말했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어짜피 우리나라 사형제가 폐지되었다라고, 지금 인제 입법부에서 종신형으로 만든다. 종신형.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그러든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산 다 그 말이에요. 단, 사람 생명권만 박탈 안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 입법부에서 만들어 놓 법이거든요? 어짜피 사형제가 폐지되더라도 종신형이라든 살아서 나가지는 문제요. 교도소에서 살다 죽더라도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잉? 그런 마음으로 저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사형이란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필요하죠.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집행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인자, 인자, 그것을 내가 집행은 인자, 나도 젊었으면은 예를 드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 나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죽을 죄를 지었으면은 죽어야 됩니다. 왜그냐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이 참, 사람을 죽인 것은 사형집행을 안 내려요. 근데, 사형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막, ○○○은 스무세 명을 죽였잖아요. 잉? 여러 사람을 죽인 것은 자기 생명도 내놔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나라가 법이 너무 좋은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구체적인 집행, 그리고 그런 그, 사형제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얘기가 좀 없는게 아쉬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집행도 필요하다.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 집행 안 하는 부분이 오히려 맞다. 맞는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맞다는게 아니라,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맞다는건 아닙니다. 저 개인, 저 생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고 또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면은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어요잉?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렇지만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죄가 되는 것이지, 마음으로 짓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서로 격분이 돼서 순간적으로 살인할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고의적 살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순간적으로잉? 물론 법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참작을 하시지만은, 이런 사람은... 그게,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박정희 정권 때, 67년도 때 지금까지 수용생활을 하는데~ 박정희 정권때나 전두환 정권때는요, 한 사람만 죽여도 잔인하게 죽였으면 사형이 선고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됐어요. 근데 인자, 좀 문민 정부 이후로는, 한 사람을 살인해가지고는 사형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잉? 소위 말해서 2사람 이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정말 그... 순간적인 살인도 사형을 당한다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더라 말입니다. 그렇잖아요잉? 근데, 예를 들어서 참, 여러 사람을, 생명을 뺏은 것은, 인자 뭐 법이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을 안 시키는 것이지, 저는 사형을 집행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

(사실상 지금 사형 집행된 지가 오래되서 집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집행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사는 것도 고맙고 감지덕지해요 저한테는.

(그럼 선생님께서 최고형 확정이 되셨는데, 그럼 선생님한테 사형선고 내리신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신가요?) 불만 없어요. 그 당시 바로 집행 됐어도 나는 불만 없어요. 날 위해서, 얘기 했잖습니까. 나를 위해서 억울하게 가신 분들 무지하게 안 좋아요. 맘이 아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들 욕을 했습니까 돈을 빌렸습니까. 그냥 지나가다 봉변 당한건데 맘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지금 사형제도는 남아있는데 집행은 되지 않고, 선생님 같은 경우 애매하게 오래 사셔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형제도가 이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형제들한테 미안한데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90프로. 왜냐하면 언론에서나 인터넷, 신문기사 이렇게 보면 그걸로 많이 날렸더라고요. 어차피 사형집행이 없는데 굳이 필요하냐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있어야 범죄가 강력범죄가 조금 경각심을 가져서 덜하지 않을까. 내가 비록 사형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사형제 폐지가 된다면 그런게 없어진다면 범죄가 조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 할 거 아 이거 뭐 사형제 폐지도 없어졌는게 걸려도 저거하진 않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경각심이..

(지금 선생님께서 사형확정되셔서 이렇게 살고 계신데 사형제도가 선생님께 적용이 된건데, 앞으로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아마도 사형제도에 관해서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빨리 집행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폐지해라 하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냥 집행 해줬음 좋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다른 질문인가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입장은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집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 사건은 그렇고 사형제에 관해서 찬성, 반대 뭐 그런 여론조사하고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찬성이예요.

반면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사형확정자도 있었다.

(사형이라는 제도가 그래도 좀 필요하단다는 생각은 드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만약 폐지가 된다면 지금 논의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대안들이 있잖아요. 그 대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사형에 대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것은 흉악한 일이에요 사실은. 흉악한 일이지요. 그런다고 해서 법에 의해 죽인다는 것은 흉악한 일이에요. 모든, 제가 이제 불교에 적을 두고 공부를 하고 생각을 사색을 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려고 살지 죽으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은 살고 싶어요. 지금은. 예전에 잡혔을 적에는 어... 법에서 알아서 하고 내가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만한 저기가 있는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없는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르죠. 지금은 모든 생명체는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유가 없는 생명체는 없잖습니까? 사형이라는 제도도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인자 저희들 빼놓고 그 이전 세대에 여기까지는 집행이 있었잖아요. 근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안하고도 감싸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딘가는 저쪽 나라에서는 15명을 죽였는데 20년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최고형이 15년인가 2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을 무작정 죽이는 것도 사실은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내 한몸 죽는 것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죽음으로써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인자 회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거죠. 교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막상 어떤 사람들을 잡아가서 이리로 와. 와갖고 너 뭘 죄를 지었어? 아 나는 이만한 거를 지었습니다. 너 이만한 거를 지었으니까 너 죽어. 그래서 죽었어. 그럼 그 다음 사람들 이렇게 잡아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수 백년 동안. 예전에는 더했겠죠. 옛날에는 꼭 사람 죽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참수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범죄라는 것이 날로 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디 그 사람들을 꼭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악해지지 않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집행도 되고, 지금이야 집행된지가 꽤 오래되가지고 사실상 지금은 집행될거라 생각을 안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사형제도는 아직도 살아있는 법이잖아요. 저번에 누구죠 그.. 한나라당 누구죠 홍준표. 그 양반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바로 내 집행해야겠다. 사형집행해야겠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법이니까 뭐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월하고 살아요. 다만, 세상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들어와가지고 비록 내가 갇힌자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있지만은 다시 이안에서는 죄를 짓고싶지 않다. 작은 죄라도. 이 안에서 죄를 짓고 싶은 삶은 아니에요. 또 뭐 저는 항상 사형으로다가 문제수예요. 최고의 문제수예요. 왜 문제수.. 세상.. 이 안에 들어와서 저는 뭐 소규칙 소규를 어기고 징계 뭐라 그러지 징벌을 받게 된게 아직까지 27년 동안 한번도 뭐 조사수용되고 징벌가고 이런건 한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이 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냐면 나로 인해서.. 국가가 나라가 혼란을 겪고 그랬는데 다시 이안에 들어와서 나로 인해서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살거예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형벌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사형확정자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아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형은 또 아예 없으면 안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맥락이 조금 궁금해서...) 그것이 그니까, 사형보다는 이런 뭐시기여, 살리는 것이 더 나아. 평생 종신형으로 살리는 것이, 사형보다는, 아예 없는 것보다 이런 거시기보다 낫다 이거죠.

(선생님은 사형이 없어지고 종신,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으로 바뀌는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선 안된다고 보시나요.) 아유, 그게 더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럼 사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셨고요. 사형이 없어지려면은 지금 최고 형은 무기징역이 되는건데, 무기징역으로 충분한지. 혹은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저희들이 감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한 20년씩 살았는데.. 무기로 준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거든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해. 오늘 감형을 받았다면 25년을 살았든, 30년을 받았든 내일부터 하루여. 그럼 50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무기가 약 27년 정도 잡는다고 보면요, 그럼 50살이면은 77세네요. 그 적게 잡았을 경우죠. 근데 인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 나가서 죽느냐, 아니면 여기서 몸이 다 허가지고 죽느냐. 그것은 대다수가 다 나가서 죽는 것을 원하지 여기 살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90프로 이상 그러지 않을까요? 100명이면 98프로? 한명정도면 여기서 죽어도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디 인자 대부분 다 고향땅 한번 밟아보고 죽고 싶고. 그것이 사람이니까. 개나 소도 사실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죽는 동물들도 있다고 하더라만.. 그렇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회가 주어지면은 또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산 만큼 어...반성도 하고 그 시간만큼 또 괴롭지만은 그것도 또 괴로운 것은 우리 몫이에요. 다른 사람 몫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 것은 우리 몫이잖아요. 그렇게 감내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80살이 된다면지? 그럼 그때 나가서 앞으로 남은 삶을 더 잘살 수 있게끔. 그 남은 시간에 그러고 생명이 뭐 나가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고향에 가서 또 참 부모님 어떤 묘소에 가더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살았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좀 나가서 죽는 것이 그래도

낮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선택하라면, 선생님이 사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 한다면 어떤 거?) 똑같아요. 도전개편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50이나 되고 한, 40이나 되고 젊은 사형수도 있지만은, 저가 나이가 70 다 됐는데, 설령 최고형이 사형제가 폐지되나, 사형제가 폐지 안 되고 있으나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쨌피 종신형도 교도소에서 사는 것이고, 어쨌피 지금 우리나라가 인자 UN에서 10년이면 사형 폐진데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게 이명박이 가 있잖아요. 이명박정권 때, 부산에 그 ○○○라고 여중생 그, 저, 성폭행 납치사건, 망크에 빠뜨려 버렸을 때,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 그 대해서 명박이한테. 명박이가 검토해라 그랬어요. 그라고 청송에다 사형장 지어가지고 사형수 분명히 이명박까지 나왔어요. 육십 일 명에서 분명. ○○○ 이런 많이 죽인 놈들 잉? 요런 놈들 사형집행 할라고 아휴 명 딱 딱 해가지고 청송교도소로 사형수 전부 이감시켜가지고 거기다 사형장을 지을라 그랬거든요? 아유, 청송 그, 군수, 청송군에, 청송 군민들이 안그래도 시별 청정지역 관광 인자, 다 베려논다고 난리가 나부렸잖아요. 그러고, 명박이가 그, 외국 잉? 뭐 우루과인가 뭐 암튼 뭐 외국에서 들은 말인데 이명박이처럼 사형집행 시키면 느그나라 전부 헌제로 없던 걸로 헌거예요. 안 그랬으면 명박이가 사형집행 했어요. 아휴 명"

법이라는 게 피해자나 가해자의 생각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모아야 하고 여러 논의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죠. 근데 법은 국회에서 우리 놓고, 만약에 통과하면은 법이 상대적으로 법이 만들어야 되지 아닙니까? 그 법이 만들어야 하는 예를 들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 어떻게 되는지 일단. 우리 보다는 그 국민의 눈높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그렇죠. 근데 사형수는 어찌 보면 어차피. 나는 그래요. 저는 뭐 와서 아 내가 좋은 말해야 된다. 나쁜 말 해야 된다. 군이 잘 보여야 된다. 인터뷰 잘 해야 된다. 그건 아예 없어요. 단지 내 마음 솔직히 얘기하고 싶은데. 그니까 그 사형제도 어떻게 만들어 솔직히 사형수 이대로 저는 이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사람 이미 사는 게 내 자기 스스로 죽지 않는다면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승리 안에 고통 나올 수 없다고. 그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죽는 거 똑같아요. 죽은 사람처럼 살지만 난 여호와 안에 사는 것이다. 영성이잖아요. 그니까 똑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언제 나가지? 내

아는 형이... 아마 이름 얘기하면 알겠지만. 28년 29년 살 20년 살고 있어요. 그니까 그 공주 있었는데 20년 살고 있는데 아 옛날에 가석방 받고 몇 년 있다가 나가는 얘기 좀 어느 정도 좀 가끔씩 나와요. 통화를 할 때나. 한 20년 정도 살다가 나갔겠지. 그니까 종신형이... 종신, 감형 없는 종신형이. 어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두 번 죽는 거랑 똑같아요. 어찌보면. 저는 또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이지만

(조금 무거운 질문을 드려 봐도 될까요? 감형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형제도가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형이 있을 때는 전 차라리 집행해버리는게 우리는 편해요. 왜냐면 있는 자체가 힘든거니까 집행해버리면 모든게 없어지니까 있는 자체가 힘들니까 그래서 더 힘든거는 이 감형되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대체로, 대안으로 폐지가 된다면 가석방 감형 없는 무기징역 이런 것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예 감형이 없는데.) 그니까 더 힘들어지.

(지금도 언제 집행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그거는 크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저는 종신형제로 갈까봐 그게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아니 뭐 종신형제로 가면 적어도 나라가 날 죽이지 않을거라는 확신은 갖지 않나요?) 그것도 그런데 차라리 그냥 젊었을 때 불러주면 더 안났겠어요? 기증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나이드신 얼마 전에 떠나신 ○○○ 형제님도 일흔몇살에 당뇨를 얻으셨는데 그 모습 보니까 형제가 종신형제로 가면 감형 없는 종신형이고 가족들이 뼈도 못찾아가는 종신형이다 이런 말들이 돌아 보니까

(감형 없는 무기형이 더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범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사형보다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 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경험 안해봤잖아. 그 사람들은 볼 때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죠.

(막상 살아보니 감형없는 무기형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제 입장은. 어차피 사형을 받으면 아무래도 제재도 많고 접견 갈 때도 혼자 간다던가 뭔가 그거에 대한 제재가 많다 보니까 그건 뭐 어차피 감형을 받아도 진짜 스무살 때 들어와서 스물다섯에 감형받지 않는 이상은 사실... 농담 삼아서 뭐 나가면 뭐 90, 100살인데 그때까지 건강하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상 선생님같은 입장에서는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것과 종신형...) 근데 사형이 있으면 솔직히 정권이 언제든지 바뀌면 할 수는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사형제 폐지 국가라고 해도 이게 사실상 폐지 말이 국가지...

(들어왔을 당시에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힘도 빠지고..) 그게 더 힘든겁니다. 왜냐면 그냥 여기서 깨끗하게 끝내면 좋은데 주위 사람들이나 직원들이나 뭐 같은 동료나 이 사람들이 야 이제 사형은 인자 뭐 없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 말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는 (없으시고.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법이 바뀌어서 지금 최고수분들을 사형 제도를 없애고 다 뭐 감형, 종신형, 무기징역으로 그냥 확 바뀌어버린다면 그런 제도는 달가우신가요?) 더 힘들지.

(힘드세요?) 네.

(어쨌든 선생님은 이런 게 연장이 되는 게 괴로우신 거죠?) 힘든 거지. 그런데도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는 거 보면 이런 모습이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식으로든 한 방향이 정해지면 당장의 괴로움은 있겠지만 불확실성은 사라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아 앞으로 평생 여길 못 나간다. 이걸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그런... 어찌 보면 법에 따라서 내 마음이 대비 해야죠. 그런데 이거 가운데 봉 뜨고 있어요. 이 밭, 땅 닿아야 되는데 밭 오히려 뜨고 있어요. 그런 저 그 그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일부 사형확정자는 죽음보다는 교정시설 안에서라도 살아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럼 폐지가 필요하다? 폐지해도 괜찮다?) 어.. 그러니까 사형제는 폐지하되, 그에 맞는 법이 인제 생겨나겠죠. 예. 그에 맞는 법이 어떤 게 생겨날진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안 나오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선생님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거랑 어떤 거?

(어떤 게 더 적정하다. 그 두개라고 하는 거는 사형집행과 아니면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사형집행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어..

(또는 정 안되면 지금 그냥 생각할 때 좀 하나의 대안으로) 음.. 깊이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도 사형폐지보다는 그래도 가석방 없는.

제5절 | 사건당시 처벌 생각

사건 당시 사형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각, 또는 사건으로 인해 받을 처벌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사형확정자들은 사건 당시 처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고, 술에 취했거나 화가나서 정신이 없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또는 잡힐 생각을 하지 않아서 처벌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처벌에 대한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생각 못 했어요

(어, 근데 첫번째 사고와 두번째 사고 때, 둘 다 뭐 술도 드시고, 뭔가 자포자기 심정이고, 뭐, 사형이라든지 벌에 대한 고민은 전혀?) 그건 없어요.

(조금이라도 없었지요? 근데 그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첫번째든 두번째든 뭔가 걱정되는, 염려되는 것 같은 건 없었어요 뭐 체포, 적발 이런 것들은 떠오르지 않으셨지요?) 그건...

(잡히면 어떡하지? 이런거?) 없었던 거 같아요.

(아예 그런 거 염두에 없이 그냥 어떤 짜증과 분노 같은 것들이 좀 더?) 그렇다고 봐야죠.

(잡혀도 상관없다, 뭐 그런 생각이라도 안하신 거예요?) 글썄요, 잡혀도 상관없다 뭐 또,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한 거 같은데.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시네요?) 생각이,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안 드시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마음을 많이 놓았기. 이 선고라는 건 저랑은 이미 별개였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이미, 이미, 마음은, 마음은 완전 떠나버렸기 때문에.

(선고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선생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예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구속 당시에는 선고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그거를 생각을 안 했고, 지금 당장 상황 자체가 납득이 잘 안되셨나요?) 예. 아예. 제, 저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사고 당시에는 사형이나 이런거에 대한 생각들이?) 그런거 전혀 뭐 또 죽일려고 했던게 아니고 했던거기 때문에 좀 약간 협박 쪽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럴라 했던 건데 항의하고 하니까 양 옆에서 또 젊은 애거든요. 공범이 젊었거든요, 그때 스무 살인가 됐었는데. 조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신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해병대 근무 하면서 정신적 질환이 있어갔고 약도 많이 먹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좀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런게 있어갔고 같이 덩달아서..

(두 번째 사고 때는 그런 생각들이 없었을까요? 사형..형벌, 처벌 이런게..?)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 했으면 못했죠

처벌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고 대답한 사형확정자도 사건 당시가 아니라,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처벌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번의 사고는 3번의 사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세번의 당시에는 각각 선생님께서 처벌이나 잡히는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은 많이 안하셨나요?) 인자 사고가 사고를 내면서 내면서 저도 인자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안했어요

(첫 번째부터요?) 그렇죠. 어떻게 혼자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살기를 바라겠어요.

(그게 그런 생각을 하신게 사건 이후인가요 과정인가요? 아니면은 사건이 저지르기전에 이거를 하면 내가 죽을수도있어 하는?) 사건이 나고 난 이후죠 사건이 나고난 이후 (사건이 난 이후?)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졌죠 계속 인자 어머니 돌아가시고나서 2차.. 인자 사건이 될 때 그때는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히 인자 몸땡이밖에 없잖아요

제 5 장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교정공무원들의 인식

제5장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교정공무원들의 인식

제1절 | 사형확정자들이 느끼는 어려움

1. 경제적 어려움

면접에 응한 교정공무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형확정자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외부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사형확정자들의 경우 교정기관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교화위원들의 일부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부분이 아무래도 부족해요. 실제로 지금 미결 내가 데리고 있던 두 명도 처음에는 여기서 온다, 그러니까 안 온다고 하다 왔어요. 저기 오면은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임님이 말씀 하신 건데. 보통 춥다 카더라고요. 이 방 춥다 카는 게 되게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이 방 춥다고 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자기도 고수들도 돈을 아끼고 하는데, 그 방이 이제 미결..사동 같은 경우엔 되게 이동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이동하고, 나가고, 집행유예 취소도 하고, 또 전방도 오고 되게 거실 이동이 많은데 그나마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딱 오면은 자기도 어느 정도 좀 편찮은데 되게 막 아무것도 속칭 뭐 법 자가 딱 들어가버리면은 아, 자기도 가슴이 너무 힘들다. 진짜 이게 그래가 한 번씩 와가 그게 요. 우리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좀 이것 좀 넣어 주십쇼 카면서, 이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복도 없다 카고 뭐 없다 카고. 그 인제 그 영향을 자기도 이제 나름 스트레

스를, 되게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어차피 사회복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막연한 얘기긴 하지만은 이 경제적인 부분은 당장 피부로 와 닿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막연한 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긴 하지만 당장 내가 밖에서 만약에 여기 면담을 한다면, 이 면담을 어떤 내용을 할 거란 내용, 막연한 내용 보다 당장이 추운 것들이 걱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과거에 비해 최근에 더 두드러진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었다. 과거 사형확정자들이 다른 미결수들과 함께 수용되었을 경우, 이른바 ‘최고수’라고 하면 공용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비용지급을 면제해 주는 암묵적인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관행이 없기 때문에 예전의 사형확정자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결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사형확정자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느낀다고 생각하는 교정직원도 있었다.

그거는 인제 이 말씀도 옳지만 다른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고수라 카면은 좀 먹고 들어가는건데, 요즘은 또 안 그래요. 옛날에 뭐 조직폭력배 카고 하면 아 행님 카고 하는데 솔직히 여기도 어차피 돈이거든요. 돈인데 뭐 조직폭력배라 카는데 돈 뭐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뭐 조폭이라 카는데 옛날에 뭐 어디 닭이라든지 먹을 거 먹이고 인사 받고 했는데 요즘 수용자들도 옛날처럼 자해하고 막 먹고 이런 거 보다 교활합니다.

뭐.. 좀.. 우에 보면은 좀 경제적인거. 어떤 방에 가면은 접견 많이 오는 방이 있으면은 접견물이라든지 구매물이라든지 마이 들어오는데, 어떤 방에 가면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쓰면서 또 일도 하면서 없는 거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면 몸이 추운거라, 마음도 추워지고. 다른 거 할 의욕도 없어지고. 이래 여 있다가 어떻게 견뎌가지고 또 다시 다른 사동에 좋은 방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좋더라도 방 사정이 좋아지진 않으니까네. 그 우리가 해결해 줄 수도 없는기고.

2. 미결수들과 함께 수용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관계의 어려움

교정공무원들의 시각에서 사형확정자들이 다른 미결수들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미결수용자들은 재판의 결과

에 따라서 석방되거나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게 되는데, 어느 경우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미결수용동에서 오래 지낼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보다는 단기간의 자기 이익에 따라서 관계가 좌우되게 되고, 이러한 현실에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 같은 경우는 방에 있었는데 그 방에 조금 젊은 아가 있었어요. 캄패도 아니고 뭐,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구십 몇 년생이 하나 있었는데 야가 들어오자마자 어이, 사장님요, 여 내 자리는 어딘교, 내 자리 내주소 이래 된 거예요. 그니까 그게 무슨 말이나면 수용자들도 방이 이래 있으면은 방이 있거든, 뭐 화장실 방 쪽이 이래 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라든가 입지가 인제 창틀이나 이런 데 좀, 좀 좋은 방에는 좀 고수들이나 방장, 정리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막내가 자리를 내놔라는 거죠. 그래가 야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요 수용자 중에 하나가, 젊은 아가 하나 왔는데 내보고 방 내놔라 칸다 카면서, ○○○가 그 얘기를 한 번 하긴 했었어요. 그래가 그 내가 아유 그 요즘은 뭐 고수라고 이제 아들이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징역 오래 살고 나이 많은 사람들 있으면 은 일단 새로 신입은 젊은 아들이 이래 해가 신입식은 없습니다. 옛날에 신입식 없는 대신에 오히려 들어온 아들이 일부러 한 번 툭 던져 보는 거죠. 내 방 내노쇼 이런 식으로. 몇 방 있어요. 그래가 이 사람은 나이가 육십 넘었는데 그래 이래 된 거죠. 이 새끼가 미쳤나 이래 된 거죠. 아들뻘도 안되는 게, 평생 징역만 왔다갔다 살아 놓으니까 그니까 어이가 좀 없어가지고 좀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봤을 때는 고수가 인제 한 방에서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미결사동에 있다 보니까 기결 사동은 사정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기결사동은 한 번에 딱 있으면 출역을 해버리고 사람이 많이 안 바뀌는데 미결은 계속 바뀌니까, 자주 바뀌니까 어떤 사람이 올 지 모르거든요. 그래가 고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은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젊은 아들이 그 또 뭐 그 가가지고 한 번 툭 던지고 방 내 놓으소, 사장님 방 내 놓으소 카면서 이래가 툭 던져버리고 공격적으로, 도전적으로 이래 고수 입장에서 나오는 입장인 것 같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예전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혼거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독거 수용의 상황에도 일부 사형확정자들은 근처의 다른 독방 수용자나 수용도우미와의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사형수들 우리 대부분들이 여기 좀 민감 많이 하거든요. 거 이 그 상담도 들었겠지만 뭐 조용한걸 좋아한다던지 시끄러운걸 싫어하고 뭐 이런. 대부분 그래요. 이제 그런 것을 음. 얘기한 제가. 사형수 아침부터 애가 무슨 생각하고 뭘 하는 것도 다 안다고 했잖아요. 개들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지금 뭐 뛰어오고 그 다 알아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어, 제일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 줄 때 인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라면 담당이 안 되면 그 위에 가서 수용팀에 가서 또 이렇게 면담을 통해 가지고 그걸 요구를 하고. 하도 인자 오래 있었으니까 또 다른 직원들도 많이 알잖아요. 안면해가지고. 그러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어 그. 사형수들 대부분이 독거에 있잖아요. 수용자들하고 이게 트러블이 있을, 별로 없어요. 그럼 인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저기 저 각 옆에 독거수들 하고 있거든요. 있으면 이제 그 애들하고 어 뭐 같이 뭐 잘 지내면 상관없는데. 좀 마음이 안 맞잖아요. 까칠까칠 하나노니까. 뭐 시끄럽. 옆에서 뭐 코를 곤다던지 뭐 시끄럽게 한다던지 여러 가지 뭐 어. 자기한테 뭐 어. 이익되지 않는 것을 자꾸 이렇게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 같이 있기 싫어요. 다른 데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막 배방을 요구해요. 그럼 인자 수용자들은 그런 권리가 없거든요. 배방권리는 당연히 우리 담당이 있고, 이런 중간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 내가 재 옆에 있으면 사고날 거 같고 내가 뭘 뭐 재 뭐 맘 같으면 뭐 뭐 뭐 죽이고 싶다. 이런 말까지 심지어까지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난 방법이 어.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막 눈물로 호소하는 애가 있고, 아니면 나는 인자 사형수다하면서 강력하게 막 이렇다 아입니까. 막 내가 뭐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이 행동을 해도 뭐 난 상관 없다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 방법은 다른데 같은 거는 자기가 인제 음. 그런 것을 내한테서 약간 1프로 진짜 피해 보기 싫은거죠. 아 나는 누리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예민합니다 애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처우를 잘못한다던지 안 해준다 하면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해요. 또 귀도 엄청나게 밝아가지고 다 들어요. 이래보면. 엄청 신기해요 보면. 그런 애들 보면.

3. 언론 보도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교정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언론에서 강력사건을 보도하거나, 사형확정자와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를 하게되면, 사형확정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용 분위기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생활 자체 하고, 생활 자체가 편해야지 자기가 뭐 희망을 가지든지 하고, 하고 언론에 신문에 인제 대형사고 이런 거 나오면 그 때 되면은 그 방 자체는 분위기가 이제 좀 마이 다운되죠

애네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이 사건. 뭐 대형 밖에 사고가 나면 그렇게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그 정권 때, 사형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이런 거를 토론을 하잖아요. 아니면은 계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뭐 사건을 사형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민감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꼭 아 이런 큰 사건이 있었으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사형을 시키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그니까 그 여론을, 본인들도 이 사형이 안 될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거가 언급되는 게 ...

언론보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감형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더 크다고 교정공무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유기형이 길어봤자 20년 25년 이었는데 지금 40년도 때립니다. 미국은 무슨 법에 의해서 뭐 1296년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200년도 나오잖아요. 점점 유기형이, 기본이 30년이니까 유기형이 30년을 받으면 30년을 하면 무기수는 무조건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사형수는 사형이라고 돼있지만 언젠가는 감형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멀어지거나 그런 낙담을 하는 거죠. 언론에 나오는 TV 매체 이런 것도 많이 아들도 신문을 접하는데 그런 대형 사고가 나면

제2절 | 사형 확정자 처우에 있어서 교정 직원들의 어려움

1. 교정교화의 어려움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교정공무원들의 어려움 중 하나는 방향성있는 교정교화 처우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교정직원 중에는 사형확정자에 대한 처우를 소년범에 대한 처우와 비교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소년수의 경우에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형확정자의 경우 희망을 불러 넣어주는 것이 스스로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있었다.

음.. 저는 인제 그런 게 있어요. 어차피 여기가 교정기관이잖아요. 저는 이제 왔을 때 이제 수용자들, 소년수 애들한테는 되게 할 얘기들이 많아요. 소년수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소년수가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왜냐면 아직까지는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소년수가 사실은 재범율을 낮출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개들한테는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뭐 나이도 많고 제가 이래 하지만 근데 제가 한 번씩 보면 인제 뭐, 다른 이제 유기징역을 받은 수용자 같은 경우는 희망을, 희망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무기수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한 유기징역이 30년이고 가산시에 45년이잖아요. 30년이라해도 보통 30년 전후로 자기가 이제 뭐 생활을 행형점수 성적이 좋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30년 정도 지나면 가석방을 바라볼 수 있는데, 아, 고수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 것들에서 내가 뭔가 위로나 이런 걸. 그런 부분에선 되게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애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저희 사동에 이제 ○○○라고 있는데 가도 이제 고순데.

예 맞습니다. 그기 자기가 여기서 이래 해가지고 못 나가는데, 자기 우울증도 걸리고 정신약도 묵고, 여기서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억울한.. 또 생각나는 수용자도 있을 겁니다.

2.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서 발행하는 어려움은 사형확정자들에게도 있지만, 다른 일반 수용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사형확정자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있어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돈 같... 예, 그것도 있을 거고. 아주 어려운 분들 있을 텐데. 그... 또 이 분들 성격이. 음... 좀 모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수형자하고 일단 이렇게 섞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일반 수형자하고 섞일라면 이 분들이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분들이 좀 독특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일반수형자한테 좀 많이 좀... 어렵죠. 이 분들 성격이. 참 어려운 성격이에요. 사실 쉬운 성격들이 아니에요.

교정직원들의 어려움은 사형확정자들이 다른 수용자들과 관계가 어렵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직원들의 경우 사형확정자 뿐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데, 다른 수용자들도 사형확정자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 한다는 것이다. 사형확정자들에게 느끼는 다른 수용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직원들에게 큰 부담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수형자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사형확정자랑 같이 있다는 거를 엄청 버거워해요. 일반 수형자들이. 그니까 그 사형확정자 개인만 보면 괜찮은데 이 사형확정자랑 같이 있다는 걸 심리적으로... 다른 수형자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 분들도 오히려 힘들고. 왜냐면 다른 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분들도 힘들고. 그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사형 확정자가? 그니까 부담스럽죠. 사실 이 분들이야 뭐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분들인데... 뭐 싸움을 한 번 해도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뭐 뭘. 그냥 흥기 같은 거 들어서 치면 뭐 어차피 사형수인데 뭐 내가 뭐 이렇게, 해 버리면... 갈 때까지 갔잖아요. 더 이상 형 받을 게 없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형수들이 아니 일반 수형수들이 힘들어 하죠. 싸움을 한 번 해도 말다툼을 해도 이 분들이 막 대놓고 해 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3.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음

간혹 교정 기관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사형확정자들이 있는 경우 직원들과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직원도 있었다. 이들이 위반하는 규칙은 수용자들간의 폭행 등 심각한 경우도 있으나, 일과시간 위반, 외부와 연계된 부정물품 반입 등 생활질서를 어지럽히는 규칙위반도 교정직원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로 어려운 시간보다는. 인제 사형수들이 밤에 글을 좀 쓰는 사형수들이 있었거든요. 야간에 인제 이게 글을 쓰기 위해 잠을 안 자면은 수용 관리에서 쥔 어려운 거죠. 저희가, 저희 관리 중에 제일 어려운데 잘 땀 자고 깬 땀 깨야 관리가 되는데 관리가 잘 때 안자고 있으면 애 애가 뭘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독, 독방에 독거실에 있는 수용 여 사고를 많이 내니까 안에. 들어가 목을 때. 그 사형수들이 자살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파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특히 더 언론에 많이 커지니까. 이제 그런거죠. 이제 어떤 사형수는 자기 스토리를 막 책을, 소설 쓰는 사람도 있고 이라는데, 밤에는 그걸 해야 된다. 그런 거 때문에 약간 트러블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 "아홉시 되면 자고. 예 자고 여섯 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딱 되어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따라가죠. 혼자 방에 있거나 하면은 혼자 생활 하는게 아니니까. 사형수는 독거에 있고, 오래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젊은 직원들 오면 구치소에 대해 잘 ... 아는 거죠. 설명을 막 하는 거죠. "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인제 그래서 인제 트러블이 생깁니다.

관리하기 힘든 시간이요? 따로는 없겠지만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외부... 뭐 이제 종교... 그런 그런 것을 할 때, 외부사람. 원래 만나는 교도관, 수행자들 말고, 외부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더 신경 쓰인다고 볼 수 있죠. ... 외부인들이다 보니까 뭐. 저희가 뭐 검사하고 다 한다고 해도 뭐 일종의 뭐 부정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부정 물품이 아니더라도 그 외부사람하고 이제 그 바깥 바깥하고 통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저희는 이제 그런 보안적인 면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쓰는 거죠. ... 단절시키여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이제 외부와 소통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크다는 것도 이제 저희가 저희들도 이제 다 인정을 하는 거지만. 그거에 이제 부가적으로 나쁜 점, 부정적인 문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서. 그 점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4. 자살 우려

사형확정자들의 경우 중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한 교정직원도 있었다.

특히 자살 시도에 대한 우려는 아직 수용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기 수용기에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저희들이 그 적응 못하는 기간에는 좀 주의 깊게 보죠. 왜냐면은 또 우울증으로 빠질 수 또 자살 자해 이런 위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심히 좀 살펴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런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세밀하게 보는 편이죠.

이처럼 자살이 우려되는 경우 독거수용보다는 혼거 수용이 필요하였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어떤 심정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독거를 계속 시킬려면 영상거실에 뒤야 되는데 영상거실에 두면 또 거기에서도 말썽을 피우고 하면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네가 좀 거기 외롭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운동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해도 이제 명찰 색깔부터가 다르니까 그 같은 수용자들도 좀 이렇게 섬뜩하고 좀 접근을 잘 안할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간혹 외롭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안하는 방법을 서로 이제 그 이렇게 뒤에 이렇게 얘기를 풀다 보면 이제 서약서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혼거수용 해주는게 있어요

자살 시도가 우려되는 사형확정자들에게 종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자살 예방을 위해 정서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저 자살 얘기 했는데, 저가 아까 기독교라 했다 아입니까. 자살하면 이제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애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가 음악 같은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 현실은 아닌데, 야... 이게 음악, 수형자들이 이게 답답하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음악이나 이런 거 탁. 막 클래식 같은 거 하나 틀어주면 마음이 엄청 좋아져요. 지금 제가 이제 자살상담 이런 상담하고 있는데... 수형자들이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 이 사람들 그냥 좋은 음악실에 갖다 놓고 좋은 음악을 한 번 들려주고 싶다. 딱 얹혀 놓으면 그 편한 음악 있잖아요. 이런 어떤 거나, 아니면 기타를 한 열 개 갖다놓고 좀 이렇게 해 보라. 요렇게.... 좀 뭐 그런 처우가 좀 있었음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 처우가.

제3절 |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교정교화의 의미

사형이 확정된 이후 사실상 교정기관 외부, 즉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형확정자들에게 교정 교화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에 대한 교정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교정기관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사회복귀를 전제로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사형확정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중,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었다. 외부 사회와는 단절된 것이 사실이지만, 교정기관 안에서 삶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생명을 이어가는 동안에는 교정교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형을 집행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사형을 집행해야지 맞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안에 있으면서도 관리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살아있으면서도 그 살아있는 한은 가치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되죠. 교화 대상이 되죠. ... 살아있는 한은 교화 대상이 된다고 봐요

교정기관에서의 수용생활 자체도 사회생활이고 삶을 의미있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았음 좋겠어요. 일반 수형자랑 처우가 같다 같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 분들한테 무슨 처우를 해 준다고 보다는. 다른 수형자 처우하는 거를 같이 처우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동등하게. 다른 수형자와... 좀 법을 좀 어떻게 완화를 해서라도. 아니면 지방으로 보내서 교도소서 섞여서 다른 수형자와 더불어 사는 법을 익히게 한다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따로 두는 게 아니고 그냥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게 하는 법을 좀 배,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게 제일 약하거든요. 제일 약한 게 이 사람들이 그거예요. 더불어 사는 부분이 엄청 약해요. 사실 교정, 교화가 그거잖아요. 더불어 살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따로 살게 만들잖아요. 특별한. 그러다 보니까 더 융화를 못하잖아요. 특별한 성격에 이... 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의미 없는 거일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그니까 앞뒤는 안 맞지만 그 게 그 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교정, 교화라는 게 밖에 뭐 교화해서 뭐 사회복귀 시킬 사람도 아닌데... 사회복귀 한다는 그 그런 거 한다는 자체가 좀 앞뒤가 말이 안 맞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삶... 뭐 앞으로 여기, 뭐 밖에서 사느냐 안에서 사느냐 그 뿐이지. 요 안에서 뭐 이제 일종의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또 다른 사회라고 해야 되나? 이 여기서 또 그 이 안에서 또 사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는 걸 살기 위해서 또 교정, 교화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내세가 있다고 믿는 일부 종교의 경우 현세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뉘우치는 것이 종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었다.

오랜 세월 고통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 이 이게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잖아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거. 저는 그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실례지만 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서 자기 인생의 굴곡. 그 힘든 시간을 지내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이 안에서 그러면서.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더 깊은 어떤 걸 가지게 되겠죠.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으로 제가 기독교지만 성화의 과정이고. 불교로 따지면 열반의 과정일 것이고. 어떤 그런 과정이잖아요. 뭐 절에 가서 목탁만 두두려 30년 두두려서. 이 뭐 석가가 되는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응보의 과정을 거치면서 석, 뭐 불교식으로 따지면 석가가 되는 거고.

이게 이 기독교로 따지면 뭐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 과정이 쪽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그.. 저는 반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 사람이 사회복귀를 한다고 해도 반성과 회유가 없으면은 사회복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반성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로 복귀했을 때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 분들은 못 나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또 되게 맞을 수도, 생각은 맞을 수도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인 입장인데 저는 그래도 저는 인제 뭐 종교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자기 영이 좀 ...

아 저는 한 번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일반이 봤을 때는 고수 같은면은 바로 자살할 것 같고, 실제로 옛날에 ○○○ 자살 했잖아요. ○○○ ○○○○소에서 자살을 했고, 물론 그렇게 막연하게 그런 희망이 사라진, 절망감에 쌓여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 물론 뭐 교정기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단계는 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형확정자들의 생활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러한 것이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었다.

근데 이 분들이 알게 모르게 가는 사람마다 파급해 끼치는 효과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음 종교적으로는 보면 음... 종교적으로 변화된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많이 이렇게 좀 변화시켜 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 분들이 왜냐면 같이 어떤 이런... 아니고, 이 분들이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다른... 수형자들한테 보이는 어떤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뭐... 뭐 이 분들이 어떤 수형자들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뭐 이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나가면 이렇게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 했을 때 다른 수형자들 보는 눈이 다른 많거든요? 아 그러구나. 그래서 나가서 음... 깨닫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 뭐 수형자를 딱 보면 아 사형수구나... 그러면 아 나는 뭐 얘기해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구나. 내가 앞으로는 뭐... 나는 이렇게 해지 말아야 이런 어떤 깨달음도 줄 수 있고요. 또 이 사람들 종교적으로 많이 전도도 많이 해요. 많이 변화 되죠. 예를 들어서 밖에서는 음... 좀 흉악한 범죄자가 맞지만. 10년 15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후회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뭐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죠. 하다보니까 이제 변화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변화되는 과정이 있고, 이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변화되면서. 이 사람이 성장한다, 그러면 이 사람 인격이 이 안에서 성장하고, 자기 자신에 성장한다고 그러면 그게 최종 교화가 아닐... 꼭 밖에 내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종교가 어떤 거든. 성찰을 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했다 그러면. 그냥 저희 그 교정 교화는 성공을 한 거지 아닐까요? 이 사람 꼭 내보내야지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 목적은 다 이룬 거죠. 한 사람은 변화시켰다.

반면 일부 직원은 사형확정자들에게 교정교화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단지 수용생활 중 질서 유지 차원의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었다.

법적으로 사회복귀를 모순되니까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이안에서 안전질서 유지차원에서 질서 잡는 차원에서만 하는거예요.

미결 같은 거 자기들이 재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마는, 기결이나 특히 무기수들이나 장기수들이 할 것이 없고 방에 있으면은 어떤 그 삶에 대한 어떤 그릇된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탈옥을 시도한다거나 다양한 그 안 좋은 쪽으로 대부분 좋은 사람들도 간혹 가다보면 안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범죄를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작업이나 서예나 계속 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관리차원에서는 발전적인 거죠.

사형확정자들에게 허용된 교정교화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이 출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 직원들은 이들이 출역을 나가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출역은 삶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 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요. 돈을. ○○이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봉투공장에서 가가 최고 70만원까지 벌었어요. 지금은 그 공장이지. 이게 뭐든 한 공장에 계속 못 있으니까. 못 있으니까 다른 공장으려가서 그 정도 못 받는데. 그런 면에서 수량제가 우리가 부정일급이 있고 자기 한 만큼, 자본주의의 논리지. 한만큼 돈을 주는 데가 있어요. 몇 개를 점으면

개당 몇 십원씩 해서. 야가 얼마나 손이 빠른지. ○○○이 내가 면담 안했습니다. 7명에 안 들어갔어요. ○○○이는 70만원씩 벌어서 야까 고등학교 이번 수능 봤다는 애한테 매달 얼마씩 보내고.

미결 같은 거 자기들이 재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기결이나 특히 무기수들이나 장기수들이 할 것이 없고 방에 있으면은 어떤 그 삶에 대한 어떤 그릇된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탈옥을 시도한다거나 다양한 그 안 좋은 쪽으로 대부분 좋은 사람들도 간혹 가다보면 안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범죄를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작업이나 서예나 계속 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관리차원에서는 발전적인 거죠.

출역제도는 사형확정자들뿐 아니라 수용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수용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수용자들만 좋아하는게 아니라.) 그럼요. 이게 그렇죠. 이게 관리자 측면에서도 좋죠. 이게

제4절 |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

실제 교정직원들과의 면접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사형확정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 경험, 사형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처벌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는 교정직원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 중 처우에 대한 의견만을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교정직원 중에서는 사형확정자들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분류와 이에 따른 처우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근데 지금 우리 교도소 입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형수들도 지금 세분화를 우리가 이제 분류 처우 같은 경우는 인제 지금 사형수 이렇게 하고 징역 수용자 그런 식으로 갈라버리는데 미결수로 인제 갈라버리는데 아.. 우리 그 교도소 입장에서도 그러고

형사정책적인 입장에서도 사형수를 세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범죄에 이르게 되면 과정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은 저지능이 있는데 그 동물적인 그런 것 때문에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지능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여기 있는 모수형자 한명은 계획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그 집에 불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 그 여자. 여자 혼자 있다는 것을 보고 접근해서 둘을 다 죽여버린 이, 이런 지능적인 범죄자도 있고 어떤 수용자는 자기 성적인 그런 결로 인해서 지금 ○○ ○같은 단적인 예로 그런 유사한 수용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로 교도소 내에서도 그 폭력성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도 사실은 위험한 행태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 그 위험성 있는 사람들은 출역같은 것도 제한을 시켜야 되고, 그 CCTV 연결 해 갖고 더 확실히 해서 그렇게 분류를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일에서 공격성이 없거나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사형수들 이렇게 그.. 사건 열어보면 이렇게

이와 관련하여 사형확정자들에 대해서도 일반수에게 적용되는 급수 등을 적용하여 처우의 다양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었다.

예. 사형확정자는 급수가 없죠. 일반 수용자는 에스원, 투 … 모범수라는 개념에 점점 생활을 잘하면 출소 전까지 한 단계씩 올라간답니다. 네 개의 단위에서. 그래서 첫 번째 계급이 4급이면 에스 4급. 에스자는 빨게요. 4급이면 접견도 한 달에 세 번?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이렇게 되는데 일급까지 내용은 매일 하루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혜택이 있어요. 전화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사람들이 차등에 있고, 다 그래. 근데 사형수는 법에 사형수라고만 되어있지, 뭐야 우량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럼 뭘허냐.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가 미비할까요? 그건 아닐 것이고 사형수를, 사형수인데 애가 우량수 사형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석방이 없으니까. 자, 유기형은 30년 형을 받았던 무기형을 받았던 뭐 여튼 유기형은 사형이 아니고 최고형이 아닌 목숨을 앗아가는 형이 아닌 유기형이나 무기형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내가 잘 살면 계급이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갔다는 것은 징벌을 안 먹고 잘살았다는 거고 교도소 규칙을 준수했다는 거고 그래서 가석방 심사할 때 적용이 되고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를 주는데 사형수는 가석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돼요. 우리 저 법에서. 나는 정권에서 명령만 내리면 버튼을 눌러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니까 이제 사형 폐지 그런 것 때문에 못하지만? 그러니까 계급 논리가 없어요. 줄 수도

없고. 그럼 계급 1급 2급 사형수 1,2,3급을 줘서 뭐하게. 1급이 됐으면 내보내? 안 내보내거든. 애네들이 생활이 좋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좋아지면 무기수로 감형되겠죠. 그것밖엔 없죠.

아울러 급수 적용은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종교 활동을 확대하거나 인문학 프로그램,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다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개선은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런 자치들이 있으니까? 인제 마음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파의 그 저 분들과하고 이제 자매 결연 한 달에 한번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인제 그런 것을 좀 더 그 종교위원들도 지금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사형확정자 상담하시는 분들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만드셔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그분들이 사형확정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정행정에서 못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셔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냥 와서 그냥 찬송가 이렇게 부르고 성경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대화도 조금씩 그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형사 정책적으로 이렇게 그 사형확정자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 해주는게 좋겠다. 뭐.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교육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오시는 것도, 이렇게 심리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계속 이제 뭐 오래 됐, 오, 오래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해야 되냐? 대부분 지금 여기. 대부분 뭐 지금 뭐 20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20년 넘은 사람도 있고. 그니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거에 대한. 아까 뭐 미결, 미결 처우 수단 해 가지고. 아무튼 너무 그 불완전한 상태로 오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 사람은 진짜 작업을 시키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일텐데. 뭐 그런 생각부터 해 가지고. 그니까 무슨 뭐 무슨 이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면은 더,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뭐 그런 것들.

예, 예. 그럼 많이 좋아질 텐데.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난동피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수형자들이 진짜 이게 속에서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 힘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교정, 그 이게 없어요. 지금 그냥 묻고 뭐 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은... 보호한다고. 그니까 이제 법의 한계죠. 그러니까 이제 교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 많잖아요. 이런 데. 이런 데 좀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법으로... 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만들어줬음 좋겠어요. 뭐 탁구도 칠 수 있게 하고... 기타도 좀 치게 하고... 뭐 음악도 좀 듣게 하고... 그런 어떤 정서적인 면을 이렇게 좀 많이 좀 해주면... 자살자도 많이 줄어든 거 같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만큼 준비 처우 급이 있잖아요. 따라오지 못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뭐 뭐 마음에 안 들면 이런 거 막 어저지. 이런 사람들은 또 그 엄격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자기위주로 가기 때문에. 인권을 빙자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잖아요. 처우해 줄 사람은 확실히 처우해 주고... 인권을 빙자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들한테는 더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좀 그냥 이제 양쪽으로 좀 확실하게 이 해 줬으면 교정이... 훨씬 더 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한 쪽 면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모든 인권이 막막 다 이렇게 대우를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수형자들은 또... 밖에서 이제 자기가 생활패턴이 있기 때문에. 요구 사항을 뭐 자해한다던지 이런 걸 해결하는 수형자들이 많아요. 이런 수형자한테는 사실 인권이라는 이름보다는 음... 뭐라 그럴까...

교정교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사형확정자들에 대해서 사회 복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었다.

사형수와 무기수가 거, 거의 지금 같다고 생각하고요. 생각하면은 어쨌든 여기서 죽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보내주어야 되고, 그리고 죽으면 또 초상 치러줘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자 어 제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에서 뭐 지금 국민 세금 가지고 지금 그걸, 다 해주고 그리고 지금도 두 명이나 지금 그죠, ... 교육을 통해가지고 무기수들도 아주 모범생활 생활해가지고 어 이제 여러 가지 교정 교화 프로그램해서 재사회화를 해가지고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있잖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변할 사람이 있다고 봐요. 예 충분히 있다고 봐요.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 물론 예전에 한 번의 실수로, 대부분 뭐 한 번 실수로, 아주 못된 사람도 있지만 진짜 우발적으로 사고난 경우도 있거든요 초범 같은 경우엔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그런 기회를 주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그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해주면 그 가, 그 대신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 필요할 건데요.

반면 사형확정자들에게 급수를 적용하게 되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하는 직원도 있었다.

저 개인적으로 급수를 다배로 하여서 지금 현재 유기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그러면 그 마지막 급수에 가서는 진짜 내보내거나 큰 당근을 줘야 하는데 그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안 되고 뭐 오락기가 됐건 테니스건 뭐 어떤 그런 어떤 복지차원에서 레크레이션 차원에서 전화를 더 하게 해준다거나 더 가족을 만나게 해준다거나 ...

제 6 장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맺음말

박형민·김대근

“사형확정자”는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2008년의 개정을 통해 사형확정자의 수용지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제11조)라고 명시하였다. 사형확정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살방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거수용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형확정자를 처우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교화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2008년 개정된 「형집행법」에서는 사형확정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다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수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이후 2019년 개정에서 제41조를 통해 사형확정자도 변호인을 접견할 경우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2008년 이전에도 사형확정자는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심리상담 또는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에 사형확정자에 대해서도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되었다.

사형의 집행 및 시기와 관련하여 주된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있다. 사형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사형이 선고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벌의 집행자인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464조). 이후 사형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465조), 사형의 집행을 명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다(제463조).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그 실질은 기결수와 같다. 원칙적으로 기결수는

참관이 가능하고, 처우에 따라 접견 횟수 내지 전화통화를 달리할 수 있다. 교정 목적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편 신분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 참관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접견권 등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매일 접견이 가능하다. 또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받거나 작업을 할 수 있다.

반면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참관할 수 없지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받을 여지가 있을 뿐이다. 한편 기결수의 실질을 갖기 때문에 미결수에 비해 접견이나 전화통화 등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는다. 사형확정자에 대해서는 기결수와 같은 '처우급'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교정성적에 따른 처우를 달리 받을 여지가 없다.

많은 사형확정자들은 교정기관에서 지정한 기상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오전 일과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많은 이들은 아침식사 전까지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곤 하였고, 아침식사 전까지 종교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스케줄에 따라 하루 일과를 바쁘게 보내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무료한 시간이 주어지면 괴롭다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독서, 필사, 편지쓰기, 작업 등 무엇인가를 하면서 괴로운 생각할 시간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가끔 작업이 끝난 늦은 오후나 저녁 식사 이후에는 조금 여유롭게 지내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는 TV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이른바 “잡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사형확정자들의 거실 환경은 교정기관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출역 없이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기관도 있었고, 징역형을 받은 수용자와 혼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기관도 있었다. 독거 수용과 혼거 수용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별로 매우 상이하였다. 혼거를 선호하여 만족하는 이도 있는가 하면, 독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혼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인 이도 있었으며, 독거 수용이 마음 편하다는 이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독거를 선호하는 사형확정자가 다소 많았었는데, 출역없이 하루 종일 독거를 하는 경우보다는, 낮 일과시간에 출역을 하고 이후 시간에 독거를 하는 것을 특히 선호하였다.

혼거를 선호하는 경우 혼자 있을 경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예를들어 TV 등을 시청하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소리내어 웃는 등의 감정 표출이 가능하지만, 혼자 있으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감정표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형확정자의 생활 중 중요한 부분은 운동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독거를 하는 경우 하루 중 유일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며, 다른 사람을 멀찌감치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사형확정자들이 출역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과를 보낼 수 있었다. 작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징역형으로 수용생활을 하였는데, 사형확정자들은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사형확정자들의 수용생활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다른 수용자들이 자신을 사형확정자(이른바 “최고수”)라는 이유로 선입견을 가지고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들과의 갈등 경험도 많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사형확정자는 법적으로 미결수이므로 많은 사형확정자들이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이 혼거할 경우 기관 특성상 미결수와 같은 방을 써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 때 사형확정자들은 교정 기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 미결수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퇴소하거나 조만간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사형확정자들은 미결수들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많은 사형확정자들은 수용생활 중 여가를 ‘잡생각’없이 보낼 수 있는 취미활동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형확정자들은 유기수 또는 무기수와는 달리 직업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인문학 강좌, 예술 강좌 등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사형확정자는 형식적으로 미결수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결수보다 오랜 수용생활을 해야만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결수라는 이유로 직업교육과 인문교육 등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이들이 교정기관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였다. '사형확정자'라는 지위가 생기면서 일부 교정시설에 한해 출역이 가능해진 것은 다행한 일이나, 말 그대로 출역만 가능하지 그 이외의 교정 교화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출역은 사형확정자들이 교정 기관 내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생산적인 활동이다. 출역은 방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돈을 벌 수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가족간의 관계가 끊어져 가족이 영치금을 넣어주지 않는 경우, 작업을 통해 교정기관 안에서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사형확정자들은 교정 기관 밖의 평범한 생활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 처우의 불확실성, 반복되는 수용생활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답함과 무기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을 느낀다.

사형확정자들의 교정 기관 밖 마지막 기억은 사건 당시와 이로 인한 재판 당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화하면서 사형확정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이와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형확정자 자신은 사라져간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되지 않는 상황,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지만 아직 사형제도가 남아 있는 상황 등 사형확정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불확실성은 너무나도 많다.

아울러 매일 반복되는 수용생활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답함,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이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모든 사형확정자에게는 아니지만, 사건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나 사건에 대해 생각하면 죄책감을 경험하여 괴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들의 죄책감은 가해자의 트라우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피해자나 사건 당시를 떠올릴 때 정신적,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형확정자들은 교정시설 밖에서 점차 잊혀져 가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밖에 있는 가족과 친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사형확정자들에게 종교는 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적 위로는 그들이 사형의 두려움을 견뎌내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이 교정 기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희망없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해 주는 것이다. 이들의 종교활동은 이른바 ‘자매’라고 불리우는 교화위원들과 함께하게 되는데, 교화 위원들과의 만남은 사형확정자들이 만나는 외부사람의 대부분이며, 따라서 가장 많은 외부접촉은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많은 사형확정자들은 여유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 경전읽기, 필사 등 종교적인 행위로 빈 시간들을 채우고 있었다. 사형확정자들이 행하는 종교적 활동 중 ‘필사’라는 활동이 있다. 필사는 성경 또는 불경을 자신의 손으로 그대로 베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종교적 신심을 강화하기 위해 경전을 베끼는 것이지만, 아울러 무료한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면서 ‘잡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사형확정자들은 자기 자신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였다. 잊으려고 노력하거나 어렵게 견디고 있는 사건의 기억을 되살리게 함으로 교정기관 내에서의 생활이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사건에 대한 보도 뿐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 일반적인 사형제도에 대한 보도 등의 언론보도들도 사형확정자들을 불안하거나 괴롭게 만들기도 한다.

아울러 언론보도의 괴로움은 언론이 자기 자신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괴롭힌다는 것이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경우, 주변인들의 비난으로 인해 가족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사형확정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사형확정자에 대한 부적절한 취재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출하였다.

사형제도에 대한 태도나 사형제도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사형이 집행된지 20년이 지나 실질적 폐지가 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여전히 제도로서의 사형이 남아있다는 점 때문에 언제든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형확정자들도 있었던 반면, 사형 집행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죽을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두렵다는 사형확정자들도 있었다. 한편 사형의 집행여부나, 앞으로의 수형생활의 고통 등에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현재의 삶에만 충실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형확정자도 있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형벌의 한 형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일부 사형확정자는 죽음 보다는 교정시설 안에서라도 살아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사건 당시 사형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각, 또는 사건으로 인해 받을 처벌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형확정자들은 사건 당시 처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술에 취했거나 화가나서 정신이 없었거나, 잡힐 생각을 하지 않아서 처벌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처벌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고 대답한 사형확정자도 사건 당시가 아니라,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처벌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사형확정자들의 생활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떤 주장이 담긴 결론을 가지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형확정자들의 생활과 생각을 살펴본 결과 몇가지의 제언은 가능할 것이다.

① 법적 지위의 불확정성 제거

먼저 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결이지만 사실상 기결이고, 어느 기결수보다 오래 수용되어야 하는 모호성은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의 신분을 갖는다. 즉 확정판결이 선고된 상태일 뿐 형벌이 집행되지 않은 채 구금시설에서 대기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기결수보다 오래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질은 기결수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기결수가 언젠가 사회로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재사회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의 기획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매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굳이 사형의 폐지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사형확정자들의 법적 지위를 기결수와 같은 것으로 확정지어줄 필요가 있다. 사형확정자들도 사형의 미집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이후의 삶을 진지하

게 고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법 지위가 기결수가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사형확정자의 처우 변화의 필요성: 교정 및 교화프로그램, 직업훈련, 급수(등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형확정자들은 미결수이기에 미결에 준해서 처우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아울러 수용등급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생활을 모범적으로 유지할 실제적 동인도 없다. 그러므로 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의 명확화와 함께 오랫동안 수용생활을 해야하는 주체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형확정자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료 수용자들과의 생활 및 교정관과의 관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형확정자들에게 교정 및 교화,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올바른 교정생활을 통해 급수를 달리 해서 처우한다면, 보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게 되고 교정생활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교정관리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감형이나 가석방과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보다 높은 급수와 처우를 받기 위해 보다 노력할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도 기결수로서의 마땅한 처우를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수용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된다. 「형집행법」 제4조에서는 이 법을 집행할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규정은 국가가 자유권의 일부를 박탈하여 형벌로서 수형자를 구금하더라도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²⁶⁾ 그러나 이러한 고민들은 사형확정자에게 극악한 범행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위의 틀 안에서 모색되어야 한다.²⁷⁾ 동시에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교정

26) 헌법재판소 2016.12.29. 13헌마142 전원재판부.

관리의 효과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사형확정자들은 앞선 11명의 사형확정자와 같이, 사형확정자의 지위로 교정시설 안에서 생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년 또는 수십년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27)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고민을 '법익균형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현재 2010. 2. 25. 2008헌가23 참조

1. 단행본 및 논문

- 리얼미터,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 CBS 현안조사, 2019.
- 신양균, 사형확정자의 처우, 법조, 2012.
- 이훈동,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16호, 2002.
-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2000.

2. 판례

- 헌법재판소 2018.7.3. 2018헌바237.
- 헌법재판소 2016.12.29. 13헌마142.
- 헌법재판소 2016.5.26. 2013헌바98.
- 헌법재판소 2016.4.12. 2016헌마20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마712.
-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23.
-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8헌마230.
-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
-
- 대법원 2015.8.27. 2015도5785.2015전도105.
- 대법원 2002.2.8. 2001도6425.
- 대법원 1999.6.11. 99도763.
- 대법원 1995.1.13. 94도2662.
- 대법원 1994.12.19. 94초123.
- 대법원 1991.3.4. 90모59.
- 대법원 1991.2.26. 90도2906.
-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도1240.

대법원 1985.6.11. 85도926.

대법원 1983. 3. 8. 82도3248.

3. 기타자료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2184&ref=A> (검색일: 2020. 03.26.)

Penal Reform International,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Making Standards Works), 2007.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2018.

김대근, [휴먼 라이츠 브리핑] '묵혀둔 숙제' 사형은 필요한 형벌인가- ⑥ 사형은 언제 정당화되는가, 프레시안, 2019.08.05.

법무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2012.

연합뉴스(2018. 2. 21 자), 한국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 분류…20년 넘게 미집행
<https://www.yna.co.kr/view/AKR20180221161600004> (검색일: 2020.03.26.)

조선일보(2012. 9.11. 자), “사형제 유지” 여론, 2003년 52%에서 2012년 79%로 늘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1/2012091101184.html (검색일 :2020.03.26.)

중앙일보(2019. 6. 13. 자), 정부, 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권고 수용 안 해…“국민여론과 법감정 고려” <https://news.joins.com/article/23496351> (검색일 : 2020.03.26.)

한겨레신문(2018. 10. 16. 자), 사형 멈춘 지 21년…사형수 61명 여전히 복역중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952.html#csidx49775adf062a288b3df785a2171ecbf (검색일: 2020.03.26.)

Abstract



The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Prisoners on Death Row

Bark, Hyung Min · Kim, Dae Keun

The death penalty is maintained as a system. However, it has been internationally classified as a 'substantial abolition' country by not executing the death penalty since 1997. Under these circumstances, discussions on the death penalty continue to take place, including legislation on punishment that could replace the death penalty.

Public opinion arises about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whenever a violent incident occurs or a related issue appears. As such, the death penalty is an issue of interest not only among academics but also among the general public.

There are a number of legal and philosophical arguments related to the death penalty. Yet research on the death penalty itself is extremely scarce. Despite a number of academic discussions related to the death penalty, empirical data on the death penalty are very scarce.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daily lives and thoughts of death row inmates.

As part of the life in the facilities of death row inmates, we drew the daily life of the weekday, the conditions of acceptance, relationships, wishes, and prison time, and statements of fear, religion, victim mentality and anxiety about the death penalty among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연구총서 19-BB-02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발 행 | 2019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한 인 섭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7,000원

인 쇄 |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02) 2272-0307

I S B N | 979-11-89908-58-4 93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